

第216回國會  
(臨時會)

#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0年12月21日(木)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
2.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대안)
3.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4.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5.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6. 相續稅 및 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
7.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
8.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
9.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
10. 教育稅法中改正法律案
11. 진화세법 폐지법률안
12.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등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13.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
14.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15. 관세법 개정 법률안
16. 信用保證基金法中改正法律案
17. 勤勞者의 住居安定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18. 農林水產業者信用保證法中改正法律案
19. 國民經濟諮問會議法中改正法律案
20.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21.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
22. 畜產法中改正法律案(대안)
23. 山林法中改正法律案(대안)
24. 농작물 재해보험법안
25. 人蔘產業法中改正法律案
26.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
27. 水產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
28. 수산물 품질 관리법안
29. 水產業法中改正法律案
30. 漁港法中改正法律案
31. 航路標識法中改正法律案
32. 港灣法中改正法律案
33. 韓國海運組合法中改正法律案
34.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

- 35.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대안)
- 36.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 37.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
- 38. 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
- 39. 商法中改正法律案
- 40. 상법개정에관한청원
- 41. 상법개정에관한청원
- 42. 회사정리법개정에관한청원

**審査된案件**

1. 住民登録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	3
2.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4
3.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4
4.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5.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6.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7.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8.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9.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10. 教育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11. 진화세법폐지법률안(정부제출) .....	14
12.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13.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14.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
15. 관세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 .....	14
16. 信用保證基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25
17.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25
18.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25
19. 國民經濟諮問會議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25
35.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30
20.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32
21.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32
22. 畜産法中改正法律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5
23. 山林法中改正法律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5
24. 농작물재해보험법안(정부제출) .....	37
25.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37
26.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37
27.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방호·장성원·장정언·정철기·정장선·문석호·강현욱·박용호·최선영·박희태·김용학·주진우·박재욱·이정일·김경천·김원기·전갑길·윤철상·정세균·이낙연·김효석·윤한도·김광원·이용삼 의원 발의) .....	42
28. 수산물품질관리법안(정부제출) .....	44
29.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4
30. 漁港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4
31. 航路標識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4
32. 港灣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4

33. 韓國海運組合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4
34.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44
36.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천정배·김태홍·나오연·심규철·이재정·한명숙·김원웅·김근태·윤경식·박인상·이미경·이성현·전용학·정세균·조순형·안영근·김영환·강운태·장성민·김부겸·김민석·정의화·김홍신·임중석·추미애·이창복·이상수·임채정·박병석·이부영·신계륜·김원기·정범구 의원 발의) .....	56
37.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김민석·송영길 의원 외 25인 소개) .....	57
38. 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나오연·송영길·윤경식 의원 소개) .....	57
39. 商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천정배·김태홍·나오연·심규철·이재정·한명숙·김원웅·김근태·윤경식·박인상·이미경·이성현·전용학·정세균·조순형·안영근·김영환·강운태·장성민·김부겸·김민석·정의화·김홍신·임중석·추미애·이창복·이상수·임채정·박병석·신계륜·심재철·김원기·정범구 의원 발의) .....	60
40. 상법개정에관한청원(김민석·송영길 의원 외 24인 소개) .....	60
41. 상법개정에관한청원(김무성 의원 외 12인 소개) .....	60
42. 회사정리법개정에관한청원(천정배 의원 소개) .....	65

(10시23분 개의)

○委員長 朴憲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住民登錄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계속)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신 崔鉛熙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崔鉛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崔鉛熙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에는 금일 오전 9시 40분 회의를 열어 金容鈞 위원, 尹景湜 위원, 李柱榮 위원, 裴基善 위원, 宋永吉 위원, 趙舜衡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전원이 참석하여 이 법률안에 대하여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영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안 제21조제2항제3호는 그 범죄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 처벌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첫째,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둘째,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미성년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를 각각 처벌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셋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함께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이외의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 경우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전과자를 너무 양산한다는 의미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租稅特例制限法中改正法律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3. 農漁村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10시25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洪在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洪在馨** 재정경제위원회 洪在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安澤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담아 위원회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수도권 소기업에 대하여는 20%로,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30%로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자경농민 등에 대한 농지 등의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면제와 영농 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하며 셋째, 농업협동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하고 넷째,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를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다섯째,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여섯째,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며 일곱째, 조세지원

목적이 달성된 중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 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일몰시한 종료로 폐지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안경위는 丁世均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서 각각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내용을 모아서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창업 벤처기업의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둘째, 신설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제안취지를 고려하셔서 이들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및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186쪽 및 제 188쪽입니다.

안 제99조의2제1항에서는 2001년 12월 말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특례제도를 규정하면서 동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당해 기간 중에 신축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에서는 미등기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면 당연히 미등기주택일 수밖에 없는데 제6항과 같은 규정을 둔다는 것은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당초 입법취지를 알아본 결과 미등기주택을 취득한 자가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후에 미등기 전매하는 자에 대해서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02쪽, 안 제106조의2에서는 2003년 12월 말까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3조제2항에서는 제조장에서 반출될 당시에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감면되지 않은 석유류를 농어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 113조는 안 제106조를 전제로 하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두게 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바 전제가 되는 조문에서는 2003년이라는 한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전제로 두게 되는 조문에서는 아무런 시간적 한계가 없다는 것은 입법적인 불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69쪽, 안 부칙 제16조에서는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73조의 종전규정은 금년 말까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규정에 의할 경우 과세연도가 1월에 시작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가 시작하는 날까지 지출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73조의 개정규정 적용시점을 과세연도 기준이 아닌 법 시행 후 곧바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72쪽, 안 부칙 제30조에서는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 조항을 본문에서 삭제하는 대신 부칙에서 이에 대한 특례를 두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세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여타의 조세감면 물품과 형평이 맞지 않는바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유인물 74쪽, 안 부칙 제38조에서는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만료 후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제도 만료 당시에 조합 등 예탁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는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동 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 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계약금액 총액의 초과 여부는 저축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탁금과 저축금

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만기 시의 도래 여부도 동 예탁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76쪽, 안 부칙 제43조에서는 기업의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소기업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던 세액을 부채상환이나 고정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과조치의 대상이 되는 본칙 제145조에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용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신에 당해 금액을 부채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의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폐지되는 제도를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소기업과 동일하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완하였고, 기타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유인물 3쪽, 안 부칙 제1항에서는 특정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6의 시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번에 부분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바 부분개정되는 법률을 지칭하고자 한다면 법률공포번호와 함께 이를 적시하여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동법의 공포번호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시행일을 규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다만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같은 날짜에 공포될 수 있게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鄭寅鳳 위원 질의하시지요.

○鄭寅鳳委員 지금 국무위원이 출석해 있는 상태 인가요?

○朴憲基委員 국무위원은 오늘 아마 사정이 있어서 차관이 대신 출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寅鳳委員 우선 차관한테 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수도권 소기업에 대해서는 20%,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로 차등해서 지원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도권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감면률을 낮추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강화하는지 그 이유가 우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규정이라는 불만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20%인데 그러면 수도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몇 %로 감면하는 방침으로 돼 있는지도 불명확하게 나와 있고 결국은 이게 수도권에서 기업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불이익한 대우를 받아서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평등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예탁금에 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농업협동조합 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이렇게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여타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장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다시 특정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다시 헌법상의 기본권, 평등권을 침해한 그러한 요소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우선 차관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우선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어서 좀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이신 洪在馨 의원님이 먼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洪在馨 정부안은 당초에 10% 균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安澤秀 의원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된 법안을 제출하면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차등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안을 제출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경제가 상당히 불균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차등을 두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헌법상에 조세평등주의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실질적인 평등, 형평 원칙이 더 부합하다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현행법에서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등해서 조세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불리하게 돼 있고 지방은 더 유리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토의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어떻게 차등이 돼 있는가 하는 것은 필요하시면 정부 측에서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정부 측 답변을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鄭寅鳳 위원님……

○鄭寅鳳委員 정부 측 답변해 보세요. 정부 측에서 지금 균일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이렇게 차등해서 소위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균일하게 감면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해서 안을 올렸던 겁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그런 점도 고려했다고 보겠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지금 경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소기업보다 비수도권의 중기업을 더 보호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점에서 과연 이게 지금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께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최소한 이 법문에 보면 수도권의 소기업을 20% 감면하고 비수도권의 중기업을 30% 감면하는 이런 식의 법안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걸리게 되면 이게 위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제가 물어본 것, “농협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 뭐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등’이라 하면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입니다.

○鄭寅鳳委員 결국 그 기관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에 끼워 넣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빼기도 하면서 결국 그런 모든 기관들이 이제는 공정한 경쟁체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협동조합이나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비과세시한을 3년 연장하게 되는 경우에 여타 은행의 영업에 관해서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도 분명히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타 금융기관과 똑같은 그러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비과세 시한을 3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차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저희도 최근에 여러 가지 놓여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다른 금융기관과의 차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초 안에도 감면은 전액면제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한 가지 부수적으로 지금 차관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말이지요. 지하철과 관련된 그런 지원도 지방의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하고 퍼센트를 높여서 지원하고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소급적용도 안 해 주고 비율이 낮아 있는 게 사실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어떤……

○**鄭寅鳳委員** 지하철에 대한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지방인 경우에는 50%, 서울인 경우에 40%를 지원하는데 지방인 경우에는 종전에 20%로 돼 있던 부분을 소급해서 보호를 하고 그리고 서울인 경우에는 소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서울의 지하철 재정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차관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대체로는 알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저희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鄭寅鳳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咸承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咸承熙委員** 저는 오늘 올라온 개정법안과 관련된 것은 별로 의의가 없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체계가……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닙니까? 그럼 조세에 대해서 특례를 못 하도록 제한하겠다는 법인데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니까 맨 특례만 잔뜩 정

해 놓았던 말입니다.

법체계상 어떤 소득세면 소득세에 대해서 정해 놓고 예외가 있으면 그 본법에다 예외조항을 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니깐 번거롭고 이러니까 특례제한법인가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특정집단, 특정계층의 민원해결법 비슷하게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맨 특정계층에 대한 예외입니다. 어떤 특정계층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 안 내게 하겠다, 몇 년간 유예하겠다, 맨 그런 법인데 이게 조세형평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법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말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을 두고 말이지요. 본법에서 소화시키고 이 법은 폐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차관님 한번……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이 법이 있는 후에 수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에 이 법의 이름이 조세감면규제법이었습니다. 조세감면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결국 조세감면을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름도 조세특례를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 산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 내지는 계층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조세 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또 감면 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감면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축소해 나가고 중국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金容鈞 위원 질의하시지요.

○**金容鈞委員** 이 법 다섯 번째에 보면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현재 국세정책이라 그럴까 국세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나무를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조세행정이 진행되고 있다,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인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또 거기에서 국가는 소기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여야 됩니다. 이 물건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비과세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게 되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게 되는 경향을 즉각 나타내는 것이 조세정책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 보면 국민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하고 나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면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5년간 발생한 것만 면제해 준다 그러면 작은 이사를 하게 되는데, 5년 이상 산 사람의 경우에는 면제해 준다는 식으로 하면 사람이 안정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성과도 관계되어 가지고 땅에 뿌리를 박고 전통과 역사를 지키면서 사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세가 매년 10%나 20% 단위로 인상되기 때문에 강남지역의 소위 관광명소라든지, 유명한 음식점, 유흥업소 같은 것이 2년이나 3년 만에 계속해서 상호를 바꾸고 업주를 바꿔 가지고 옛날에 있던 데를 찾아가면 없습니다. 매년 세금을 올리기 때문에 상호를 바꾸고 업종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럴 듯한 업소를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이나 국내에서 인기 있는 업소가 되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관광문화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 업소에 대해서 실사를 하지 않고 막연히 매년 경제성장률과 곱해 가지고 세금을 자꾸 올리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업소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없다…… 그러한 조세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업소들이 계속 상호를 바꾸면서 뿌리 없는 국가로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또한 업주들의 한탕주의를 조장해서 한 이삼 년 만에 한탕하고, 빨리 이름 바꿔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한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 혼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조세정책의 잘못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타입의 자동차를 사면 세금이 싸다, 그래서 백성들이 잔뜩 사면 그 다음해에 가서 세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뒤집어 놓습니다.

재정부나 국세청에서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조세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국민생활에 조세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 가지고 좀더 선진화된 조세정책을 취해야 되겠다, 다섯 번째 항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나는 점을 지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답변하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金容鈞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아주 교훈적인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세제나 세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첫 번째, 국민주택과 관련한 양도세 문제는 저희 나라도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일부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유흥업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세정면에서 저희가 크게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보다도 법체계상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세목을 감면해 주는 법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런데 농어촌특별세법은 어려워진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역개발 사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세액의 일정 부분을 과세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특혜라고 할까 지원을 받는 감면세액의……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그 정도 지원을 받고 특혜를 받는데 농어촌이 워낙 어렵고 재원이 없으니까 감면받는 세액 중에서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라 그런 취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여기 보니까 여덟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가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세 가지입니다.

○趙舜衡委員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법사위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농어촌특별세에서 이것도 삭제되는 개정안이 나왔고 지난번에도 또 나왔어요. 지난 한 달 전쯤 그때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같이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때 陳 稔

장관한테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해야지 조세특례법에서 개정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 아마 그래서 이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저희 정부는 이번에……

○**趙舜衡委員** 원안에서는 부칙에서 개정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같이 제안했는데, 이것은 잘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농어촌특별세법이라는 것은 감면세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근거로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씩 전체적으로 제외해 나간다면 이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은 원래 과세감면을 받는 과세자가 농어촌이 워낙 어려우니까 감면세액 중에서 일부를 납세하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농어촌특별세법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해 나간다면 농어촌특별세법은 존재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면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는 도로 세금으로 내야 되는 취지의 법인데, 그것을 또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가 국가의 세무행정이나 세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전후 모순되는 세법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감면받은 납세자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지난번에도 몇 가지 개정한 것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과세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평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법은 워낙 농어촌이 어렵고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감면받은 것 중의 일부를 국가에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외하고 삭제하면 이 법의 존재근거는 상실되고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해나갑니까? 내년쯤 되면 농어촌특별세법은 완전히 사문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해야지요.

이것이 한시법 아니에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세제실장입니다.

2004년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그러면 2004년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그동안에 꾀감 빼듯이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어떻게 합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된 것은 농·수협 단위조합의 예탁금 그 부분은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어차피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이 부분은 농어촌특별세로 거두어서 특별회계에 넣어서 돌려주는 것보다는 세금을 아예 비과세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재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과세가 되었고, 다만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해서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고 나머지는 현재 시행령에서 비과세되고 있는 것을 기왕에 농어촌특별세법을 재경위원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시행령 부칙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법체계상 덜 맞으니까 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농특세의 세수감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금이 비과세 감면되는 것을 과세하는 것이 주된 세원입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보다도 증권거래대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받는 것이 있는데 당초 1조 5000억 정도의 세수조달을 10년간 하는 것으로 이 세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증권거래대금의 폭발적인 증가로 금년도에 2조 2000억 정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 1조 5000억의 전망을 훨씬 뛰어넘는 2조 4500억 원의 농어촌특별세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趙舜衡委員** 그렇게 많이 걷히니까 일부 감면해도 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농어촌 부채탕감을 위해서 특별법도 제정하고 했는데 농어촌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또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걷히니까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정책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서 농어민들의 요구를 못 들어 준다고 그래서 특별세법도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걷히면 걷히는 대로 하고 그래야지, 더군다나 한시법 아닙니까? 한시법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감면하는 과세원칙을 확고히 유지해야지요. 많이 걷히니까 상관없다고 그러고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압력을 가하고 로비하면 또 하고 이래 가지고 법의 체계가 섭니까? 재경부에서는 형평에 어긋나게 세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위원님 지적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농어촌특별세법을 제출하

지 않았습시다마는 아까 洪 의원님이 설명하셨다 시피 국회 심의과정에서 종합적인 농어촌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舜衡委員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정부에서 제안한 법은 아닙니다.

○趙舜衡委員 비과세하는 것을 정부는 제안한 적이 없어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그러나 농어촌대책에 필요한 세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일부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농어촌특별세법 자체를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시다.

○趙舜衡委員 그러니까 이 법은 본래 감면세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입법목적이거든요. 더군다나 한시법이고요.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을 한 가지라도 무너뜨리면 이 법은 존재근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마땅히 폐지를 해야 돼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저희도 2004년에 폐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한시법이니깐 한시법 기간 내에는 확고히 원칙을 지켜야지요? 자꾸 개정하면 됩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농어촌특별세의 필요성이 당분간은 있기 때문에……

○趙舜衡委員 있다마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란까지 가고, 농민들이 그렇게까지 일어났는데 당연하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세수는 확보하도록……

○趙舜衡委員 농민들이 지금 그 답변을 들으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농어촌특별세가 많이 걷히니까 감면해 주어도 괜찮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것을 농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농어촌을 위한 세금은 많이 걷힐수록 좋은 것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내년 예산에 2조 4574억 원을 확보하도록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많이 걷힐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금년보다는……

○委員長 朴憲基 차관, 지난번에도 이 문제로 趙

舜衡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농어촌특별세법의 입법취지는 법인세라든지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농특세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예.

○委員長 朴憲基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장관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은 이 법안이 정부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으로 제기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농어촌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감안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趙舜衡委員 농어촌대책에 무슨 예산이 ‘충분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농어민들이 민란 직전까지 가고……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충분히’라는 용어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집행에……

○趙舜衡委員 陳 稔 장관이 여기에서 다시는 안 한다고 했어요.

○委員長 朴憲基 앞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도록 하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예, 알겠습니다.

○趙舜衡委員 두고 봅시다.

○委員長 朴憲基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권 내의 소기업과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 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법이 정부에서 제출한 것이든 어느 특정 정당에서 제출한 것이든 의원이 제출한 것이든 간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이 점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의원입법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제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차관이 분명하게 대답해 보세요. 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그 점을 전혀 걱정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에도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 조세상 불리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지방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우대 등으로 지역적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도 지역적인 차별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되며,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 위원, 헌법에도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법으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鄭寅鳳委員 차관, OECD 국가 중에서 지역별로 차별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은 수도권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기업에 대해서만 20%이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중기업 소기업을 포함해서 30%로 차등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지만 수도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데모를 못 할 뿐이지 더 심각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대한 것은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고속도로를 점거하면 그때서야 문제가 심각하구나 해서 30% 떼어 주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고 하루하루 벌어먹어야 되고, 소기업은 5명 10명이 기업을 꾸려가야 되니까 자리를 못 비우고 데모를 할 만한 조직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소기업에 대해서만 20% 감면한다는 것이 도대체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때그때 데모하는 사람들, 집단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헌법상 깊은 생각을 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했다면 전체적인 것을 보고 대기업, 대도시 이런 것들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소기업에 대해서는 20%를 한다면 수도권 소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조직만 되어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농민들은 몰려와서 고속도로 점거하고 여의도 점거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교통이 마비되니까 30%로 하고, 수도권에서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차관이 알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서로 도와줄 사람도 없이 고립되어 있고, 각자 각자 벌어먹어야 되고 남의 눈치 살필 여유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모를 못 하고 점거를 못 하면 국가에서 그런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서 동등하게 처리를 해야지 수도권 소기업은 20%이고 수도권 이외의 중소기업은 30%로 차등한다는 것은 법안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양심상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차관,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정의도 있을 테고 수도권의 소기업이라고 하는 정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세제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지원제도와 이번에 바뀐 내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려야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금감면이라고 하는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7개 업종에 대해서만 납부할 세금에서 20%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본래 취지가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에 기장비용을 세금 면에서 보조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5.7%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 적용되면서 세금감면율도 20%나 경감해 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낫지, 이런 지원제도가 있으면 다른 조세정책은 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학계에서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고치면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진짜 필요로 하는 소기업으로 제한해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소기업으로 한정하고 경감률도 10%로 줄여서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부안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업종을 7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안 되니까 건설업을 포함한 도매 소매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정부안에 함께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세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감면을 크게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의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감면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 범위를 조정해서 업종은 정부안대로 다 확대하고 그 대신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은 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지방은 중소기업까지 규모를 확대하면서 수도권은 20% 지방은 30%로 감면율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근본이유는 현재 중소기업 중에서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전국에 2800개 가량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기업이고, 그 중에 2100개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저희가 조사해 보면

대부분 기장능력뿐만 아니라 그 수입금액이 거의 연간 1,000억에 육박하고 이익도 100억이 넘고 세금도 몇십억씩 내고 있는 대형 법인이어서 이런 법인들은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이외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여러 가지 기술인력개발이라든가 투자공제제도라든가 다른 지원제도에 의해서 연간 약 1조 가량의 세금지원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기장을 못 해서 이런 지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소기업들을 해주는 것이 취지에 맞기 때문에 이번에 줄이려고 하던 것인데, 지금 지방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또 가급적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규모가 큰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뜻에서 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입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OECD의 조세규범이 조세의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주어서 유도장치나 불이익을 주어서 차별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중소기업에 대한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 인정되고 있고, 모든 기업에 해주는 기술인력개발을 인정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폭넓게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례에서도 예를 들면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을 새로 만들게 되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3배 초과하는 조항이 지방세법에 있고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수도권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같은 것을 할 때 일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라든지 창업중소기업,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 이런 데 대해서 6년간 법인세 50% 또 지방세 5년간 감면 이런 제도로 차별화하는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당장 현행법상의 헌법위반의 소지를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러니까 실질적 평등주의에 맞는 것 아닙니까?

○**鄭寅鳳委員** 실질적 평등주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崔鉛熙委員** 청년자와 미성년자도 구별하고……

○**鄭寅鳳委員** 그것은 청년자 미성년자 문제가 아니라 같은 미성년자인데 다르게 대우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憲基** 千正培 위원 질의하세요.

○**千正培委員**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신 분이 세제실장님이시지요? 아주 훌륭하신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미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조세정책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기업을 창설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할 때 직접적으로 건축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규제되고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을 초과하고 있는 제도들을 이미 몇십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의 취지나 OECD의 관례에 따라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면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기업들 간에 차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평등은 이 법이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여러 포인트에 덧붙여서,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어떤 기업을 창업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서 하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감수하겠다고 하는 기업인들한테 갑자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의 범위에 속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수도권과 수도권 외 기업의 차등제도를 지금 입법하되, 예를 들어서 3년이나 5년 뒤에 시행한다든가 이런다면 합리성이 있겠지만 갑자기 국회에서 기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불의의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적인 평등원리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데 조금 적게 준다고 하는 것이지 기존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로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는데 수도권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과 차이가 있으니까 수도권에는 20%만 주고 지역에는 30% 준다…….

○**千正培委員** 일단 불이익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약간의 이익을 주면서 차등을 두면 괜찮은 것입니까?

○**委員長 朴憲基** 불이익을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요. 그런 각도에서 볼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심리해야 될 법안이 지금 현재 42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 4시까지 하겠습니까?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온 의원입법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寅鳳委員** 표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도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수도권 소기업도 20%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중소기업은 한 푼도 없는데요.

○**委員長 朴憲基** 아까 세제실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소기업하고 지역의 중소기업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소기업이 매출도 많고 더 활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千正培委員** 그런 뜻 아닙니다. 중소기업 말씀입니다.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金振杓**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심의한 대로 개정될 경우에 鄭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대표적인 기업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鄭寅鳳委員** 소기업도 20%밖에 하지 않잖아요? 지방의 중소기업은 30%입니다.

○**財政經濟部企劃管理室長 金振杓** 그런데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큰, 대한민국에서 30대 재벌기업을 뺀 나머지 2800개가 중소기업의 구분에 들어가는데 그 2800개의 기업은 기장을 지금도 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장을 통해서 각종 투자세액공제라든지, 투자준비금이라든지, 기술인력개발에 따른 세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에 적용을 안 받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세금 경감을 받고 있는 것이 연간 약 1조 가량 세금 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본래 취지가 기장 능력이 없는 소기업에 적용해 주기 위해서 무조건 세액이 나오면 그것을 기장을 했든, 신청을 했든 묻지 않고 깎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적용을 너무 늘리는 것은 차라리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만 못하다 해 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경감이

이런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투자세액공제라든가 기장에 의한 지원이 서로 겹칠 때는 세법상 중복지원은 못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지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은 기왕에 세법이 만들어 놓은 다른 지원제도로 가고 그 제도에 의해서 똑같은 지원을 받고 그 대신 이 제도 자체는 당초 목적대로 조세감면을 줄여 가는 취지에 맞게 작은 규모 기업으로 줄여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寅鳳委員** 정부에서는 원래 균등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그것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원래 균등하게 세율을 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趙舜衡委員** 수도권, 수도권 하는데 어디까지가 수도권입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인데 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인데 대체로 경기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 위원, 어떻습니까?

○**鄭寅鳳委員** 이것은 법률논리나 조세공평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균등하게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로서 반대의사를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洪在馨** 위원장님, 헌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委員長 朴憲基** 그것 알고 있습니다.

소위에 회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 소위원회에 넘긴다고 해도 결론에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되고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실질적인 평균 비율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 정부안에 대해서 조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20% 올려 주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가지고 갈등을 조장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방의 경제가 수도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이것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시적인 기간 내에만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지방경제도 나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러니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조항도 많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표결한 예는 없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소위원회에……

○**崔鉛熙委員** 소위원회에 넘기지 말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회의록에 모두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千正培委員** 위원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굳이 지연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위에 안 넘기시더라도 이 상태로 의결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 쪽과 상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원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후에 법사위에서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은 계류하겠습니다.

○**金容鈞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법안의 법사위원회에서의 쟁점은 헌법상 말하는 평등의 원칙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아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원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법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촌의 중소기업 30% 감면과 수도권 지역의 소기업에 대한 20% 감면이 과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제실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촌과 도시 또 농업진흥지역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에 의해서 합리적인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이 현행법 전체의 체계이고 우리 헌법의 정신이라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평등권 논란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소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점 유념하셔서 이 문제를 결론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 2개의 법안은 오후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6. 相續稅및贈與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7. 證券去來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8.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9. 交通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0. 教育稅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1. 전화세법폐지법률안(정부제출)

12. 國稅와地方稅의調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3. 國稅基本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4.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5. 관세법개정법률안(정부제출)

(11시31분)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전화세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관세법개정법률안,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경제부차관 나오셔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寅鳳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말씀하세요.

○**鄭寅鳳委員** 재정부장관이 아직도 출석을 하지 않는데, 물론 출석을 못 한다는 사유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사유로 못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차관이 설명을 하고 제안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재정경제부차관입니다.

저희 장관께서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해야 될 일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10시 30분경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제안설명하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등 12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에 12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그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조세정책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갖춘 선진세제를 지향하면서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기본방향하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경제회복을 세제면에서 적극 뒷받침하였고, 지난해에는 봉급생활자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고액소득자와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하여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간 특정 정책목적의 지원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온 부문들을 정상화하여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는 운수업계·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의 세금 경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활용함으로써 대부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납세편의와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고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세제를 보완하는 등 세제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은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중산·서민층의 세금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앞으로 2001년에는 불입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2년부터

는 전액 소득공제를 허용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향후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기존 불입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25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인세법의 개정은 일반법인 간의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경우에만 그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금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지주회사의 2분의 1 수준으로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2001년 7월 1일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개인과 같이 20%에서 15%로 인하하고, 현재 채권거래 시마다 채권매도법인이 자기의 보유기간이자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복잡한 제도를 폐지하고 추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은 조세회피 목적의 변칙적인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세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합병·분할·증자 등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제한에 예외를 인정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원활한 재원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계열회사의 광고 등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증권거래세법의 개정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도가액과 세법상의 평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는 등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비상장 주권의 과세표준 계산 시 시가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및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의 개정은 그간 산업지원,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운용해 온 결과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구조를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유 및 석유가스 중 부탄은 휘발유와의 형평을, 등유는 경유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여 각각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유는 산업용 천연가스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새로

이 과세대상에 추가하되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교통세법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특별소비세에 포함되도록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세법의 개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교육재원을 확충하고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등유분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등 금년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일부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05년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가격조정 범위 내에서 석유 가스 중 부탄 중유 등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액에 대하여도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는 등 교육세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방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교통세법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시한도 2005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세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법률안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다른 세법이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01년 9월 1일부터 전화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에 흡수 통합하여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던 전화세가 2001년 9월 1일

부터 폐지되고 부가가치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 양여금의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1년 말까지는 교통세의 2.4%를, 2002년부터는 매년 교통세의 14.2%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기본법의 개정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요건을 완화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사청구를 하는 납세자도 심판청구를 하는 납세자와 같이 청구인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성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간의 국제거래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국가 간의 상호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 합의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행정소송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확대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외거래에 대한 자료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세법의 개정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전면 재정비하는 등 납세편의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고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세액 계산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이 신고납부 대신 부과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와 납세자의 권익보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차량 철도 등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여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고 선박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에 관한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가산세의 부과시점을 신고수리 시에서 납부 시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12개 법률안에 대하여 기본취지와 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12개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등 12개 법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103쪽, 안 제37조제1호의2에서는 기타 소득 중 당첨금 등의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당첨직전”에 슬러트머신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있는바 이는 당첨이 될 그 회에 투입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의도이나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당첨이 된 그 회가 아니라 그 직전 회에 투입된 전체 금액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당첨당시”에 투입된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05쪽, 안 제46조제2항에서는 채권 등의 만기전 매도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실제로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원천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조서만 작성 제출하는 제도로 변경하면서 그 지급조서에 기재하는 세율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록 지급조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이에 기재되는 세율은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30쪽, 안 제73조제4항에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입법취지는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만 제외하고 그 외 연금소득 등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의 표현으로 볼 때에는 마치 일용근로자는 모든 경우를 다 배제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58쪽, 안 제126조의2제2항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범위가 동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정한 양도소득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동조 제1항의 소득이라는 용어 다음에 “(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소득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84쪽, 안 부칙 제11조에서는 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동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법은 각 조문별로 시행시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시점인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60쪽, 안 제73조제8항에서는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동조 제9항 이하에서는 아무런 수식어 없이 “채권 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바 이렇게 할 경우 이러한 용어들이 그 의미의 범위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제8항의 채권 다음에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70쪽, 안 제98조의2제2항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 범위가 동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특정한 양도소득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동조 제1항의 소득이라는 용어 다음에 “(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여 소

득의 범위가 일치되도록 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39쪽 및 56쪽, 안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는 공익법인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특정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도 이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공익법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의 공익법인이 위 각 조의 다른 항에서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적용받는 것인지 불명확해지므로 괄호부분을 분리하여 공익법인을 수식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53쪽, 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3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라고 표현하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경우 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 받는 경우”라고 표현하여 서로가 서로간에 계속적으로 포함 내지 배척하는 무한 반복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각 항의 범위가 확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3항에서 이를 조정하여 그 대상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34쪽, 안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에 관한 적용례를 동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법은 몇 가지 조문에 대하여 그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있어서 “이 법 시행일”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시점인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증권거래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16쪽, 안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규정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시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는 관계법률의 근거규정 중 소득세법 제41조는 주권

등의 양도에 관계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유인물 14쪽, 안 제1조제2항4호다목 및 아목에서는 과세물품을 규정하면서 다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5항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에서 최종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굳이 법률에서 과세물품이 중복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문을 더욱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10쪽 및 11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특별소비세법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시행일과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에 같이 개정되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다목의 경우에도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행일과 적용례의 규정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전화세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4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를 보시면 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면서 “중전의 전화세법”에 의한 부과대상이 되는 전화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전의 전화세법”이라는 표현은 전화세법의 부칙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며 이 법에서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문맥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14쪽, 이번에 이 법안과 함께 제출된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에서 이제까지 국세의 세목으로 하고 있던 지방세부

가 교육세를 지방세의 세목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국세로 전제하여 두고 있는 규정이 정비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세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하면서 동항제10호의3나목에서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당해 국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은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관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63쪽 및 67쪽, 안 제51조 및 제57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을 규정하면서 누구의 요청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53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에서는 부과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납부된 관세를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앞뒤 조문 간에 연결이 되지 않는바 조문 간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제51조 및 제57조에 부과요청에 관한 근거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94쪽, 안 제97조제1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물품에 관한 면세를 규정하면서 그 일정기간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표현으로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이 1년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09쪽, 안 제114조제1항에서는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에 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전통지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를 그 하나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사전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의 유무는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사정에 달린 것인바 이러한 사안을 사전통지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유사 입법례로서 국세기본법에서도 이러한 것을 예외사유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142쪽, 안 제179조제5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경우 상속인에게

필요한 자격을 규정하면서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 형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상속인에게 직접 적용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유인물 174쪽, 안 제247조제3항에서는 수입물품 검사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규정하면서 보세창고 중 자신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해서 보세창고가 마치 두 종류가 있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바 이 법에 의한 보세창고는 한 가지 종류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초 입법취지 또한 보세창고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창고가 없는 영세 수입업자에 대하여 물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의도이므로 앞뒤 조문의 모순이 없이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柱榮 위원 질의하십시오.

○李柱榮委員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그 개정취지는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전화세를 폐지되고 또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예.

○李柱榮委員 그런데 그 부칙 4조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보전하려고 하는 지방양여금 재원을 거기다가 지방양여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 가지고 2항에다가 해 놓은 게 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예, 그렇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이걸 지방양여금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방양여금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렇지 않아요?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이번에 전화세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부족재원을 가지고 교통세액의 일정액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李柱榮委員 교통세액을 가지고……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예, 그렇습니다. 교통세의 14.2% 해 가지고 보전해 주면서 그에 관련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양여금법 관련된 조항들을 가지고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니까 교통세 전액을 이제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을 하도록……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그게 지금 교통세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면서 그 중에서 14.2%가 전화세 폐지에 해당되는 세액만큼 지방양여금으로 보전되는 것입니다.

○李柱榮委員 4조2항은 어떤 내용들이 개정이 되는 겁니까?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한다.” 이랬는데……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4조2항은 개정사항이 현재 지방양여금법에 지방양여금 재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변동이 없이 교통세액이 지방양여금으로 이전되다 보니까 교통세는 교통세법에서 도로정비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세액은 그 취지에 맞도록 전액이 도로정비사업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현재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주세액의 일부를 전 재원은 현재하고 변동이 없이 조정해 주는 그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대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이런 재원은 현행의 재원하고 똑같이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상의 조정은 없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니까 교통세액에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방양여금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재원은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주세에 대해서는 이 개정법률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憲基 보세요. 누구입니까?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세제총괄심의관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심의관!李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해야 되지 왜 이 법에서 타 법을 개정하느냐 근본적인 취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교통양여재원 전액 하는 것 이런 것이 모두 됩니까? 전에 이게 전화세에 포함

됐던 그것입니까?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니까 이게 그런 비율은 똑 같고, 지방양여금법에도 같습니까?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예, 같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똑같고 다만 전화세가 국세로 되니까……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 대신으로 이름이 교통세 양 여재원으로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렇게 해서 그게 근본적인 법 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財政經濟部稅制總括審議官 崔庚洙 예, 그렇습니다.

○李柱榮委員 예, 좋습니다.

증권거래세법 7조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에서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예.

○委員長 朴憲基 나와서 대답하려고 하면 승낙을 받고 직위를 밝히고 해요. 그래야 속기록에 적 지……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재산소비세 심의관입니다.

○李柱榮委員 재산소비세심의관, 2항에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1항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 니까?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6페이지에 보시면 2호 가목, 맨 위에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 으로 양도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가의 개념을 정해 주는……

○李柱榮委員 그 가목에 있는 시가, 그걸 지칭하 는 겁니까?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네, 그렇습 니다.

○李柱榮委員 시가라는 개념이 세법 여러 군데 나오고 있지요?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네, 그렇습 니다.

○李柱榮委員 국세기본법에도 시가라는 개념이 나

옵니까, 안 나오니까?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기본법에는 없습니다.

○李柱榮委員 기본법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 시가라는 개념은 증권거래세법에서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겁니까?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네, 그렇습 니다.

○李柱榮委員 그래요? 지금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예정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시가의 개 념을 정해 주는 건데요. 불특정 다수인 간에 거래 된 가액, 그런 개념을 정해 줄 예정입니다.

○李柱榮委員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거래에 의 해서 형성된 가액,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시가의 개 념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산정하겠 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그걸 측정할 수 있지 요?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시장이 있 으면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 장의 형성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실제로 거래된 가격,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 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柱榮委員 실제로 거래된 사례가 있을 때에는 그 가격으로 정하고 또 그런 가격이 없을 때는 어 떻게 하지요?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는 거지요. 주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법에서 평가방법을 규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법에 규정돼 있는 평가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여기에 이 법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라고 규정 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 내용을 그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시가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상 의문의 여 지를 남겨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주는 것보다는 법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어떻겠어요?

○財政經濟部財産消費稅審議官 韓廷基 다른 세법 에서도 시가의 개념을 법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시가의 개념은 하나의 해석적인 규정

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시행령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입법례에 따른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柱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趙舜衡 위원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소득세법에서 서화와 골동품에 대해서 과세를 3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금 몇 번 유예한 겁니까? 지난번에 언제 유예한 겁니까? 2001년까지……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세제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화, 골동품에 대한 과세유예는 90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유예가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달에 시행을 유보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새로 과세하는 것으로 97년 12월에 입법이 되었는데 이번에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전국의 화랑이나 골동품 거래업체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극심한 불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3년간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이 있었습니다.

○趙舜衡委員 정부원안에서 없었는데 재경위원회에서 한 겁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예.

○趙舜衡委員 아까 제안설명에도 조세정책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갖춘 선진 세제를 지향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90년부터 네 번씩이나 이렇게 유예를 하는 건 이게 공정성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득세에서 과세 자체를 유예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소득세법에는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한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趙舜衡委員 소득세법에서는 없지요? 이것 하나 뿐이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예,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이렇게 특례를 인정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趙舜衡委員 얘기하지 마세요. 더 얘기 안 해도 알겠어요.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라 이 상속세·증여세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지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상속세·증여세법은 종이호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강자 특히 재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종이호랑이고 그리고 모든 세정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엄격하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적 강자에 대해서는 느슨하고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 민심입니다. 지금 국민여론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제는 잘 돼 있는데, 법과 제도는 이 이상 잘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집행하는 세정이 말이지요. 말은 공평성을 지향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변변이 입만 열면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안에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삼성SDS 李健熙 씨 일가에 대해서 사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두 번이나 국세청에 대해서 7개월 전에 제보했는데 지금 국세청이 말이지요. 이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중이라는 회신 달랑 하나 보내고 7개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지요. 상속세·증여세법개정법률안도 보니까는 지금 무슨 취지요?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개정하면 뭐합니까? 실제 말이지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지,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말이지요. 8·15경축사에서 말했는데 이렇게 개정안만 이렇게 마련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들어만 두세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鉛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鉛熙委員 차관께서 잘 아시겠어요? 세제실장이 답변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심사 중인 12개 법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포함해서 13개 법안 중에 증권거래세법하고 전화세법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 3개 법률안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법률안들은 작년 99년 12월달에 전부 개정된 것이지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그 중에 99년 12월 3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다 개정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소득세법은 금년 10월달에 개

정했지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때 개정하고 지금 이렇게 공격적인 개정안이 나오는 이걸 함께 할 수 없었습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예, 금년 10월 초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6월 임시국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경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가 됐는데 그 뒤에 의사진행이 잘 안 돼 가지고 미루어졌다가 10월달에 다시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정부가 그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증권시장과 지방 건설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항만을 먼저 6월 임시국회에 법안으로 입법했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6월에 의결되면 바로 7월에 집행하려고 하다가 10월에 의결돼서 그때부터 집행하게 됐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런데요. 개인소득에 관해서 소득세법 하나 예를 들자. 금년 12월 말까지는 1차 신고를 하지요. 전년도 해에 기준해 가지고 1차, 종합소득세 신고를 예로 든다면……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년……

○**崔鉛熙委員** 1차신고, 예비신고를 12월 말까지 하고 확정신고를 그다음 해 6월 말에 하지 않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11월 말까지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작년도 낸 세금의 절반을 중간에 냅니다. 다음에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崔鉛熙委員**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5월 말까지 확정해서 6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물론 정부가 세제정책이라든가 또 국민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 조세제도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부수 관련법안들이지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예,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그건 인정하지만 매년 이렇게 조세제도를 개정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저희도 가능하면 세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잦은 세제개편을 피하려고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경제운용과정에서 특히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

황에서는 관계부처나 업계나 이런 데서 개정요구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 많은 것이……

○**崔鉛熙委員** 경제사정이야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잘못을 왜 국민한테 전가하냐 이거예요. 조세제도가 좀 안정돼 있어야, 돈을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는 사람이 세금을 잘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매년 세제가 바뀝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을 하든 대기업을 하든 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세제가 좀 안정이 돼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도 준비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할 텐데 매년 바뀌니 뭘 믿고 세금을 제때 낼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게 보면 전부 정부편의 위주로 돌아가는 거요. 매사가…… 제가 사실 정부가 경제정책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세제만 해도 세제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받는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제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국민들에 대해서 과태료만 부과하면 됩니까? 정부가 뭔가 잘못돼 있잖아요. 한참 잘못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사정이 엉망진창이니까 세제를 바꾸어서라도 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작년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바꿉니다. 그리고 금년, 어느 법안은 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같은 것은 무슨 필요성이 있었지만 10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만이라도 세법을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것 두 가지는 10월달에 같이 개정하면 안 됐습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저희가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이 법안은 9월 30일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崔鉛熙委員** 9월 30일날에 제출해 10월달에 그 법안이 심사가 됐으면 빨리 준비했으면 10월달에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그런데 그 법안의 심의는 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마쳤습니다.

○**崔鉛熙委員** 6월 임시국회에서 마쳤던 이 법안을 진작 좀 냈으면 법사위에서 같이 심사할 수 있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국민들한테 자꾸 이렇

게 부담을 줍니까?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번에 세법 14개 법안을 이번에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쯤 되면 또 개정하겠지요? 그때는 세제실장이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의 문제, 이 법의 집행력하고 법적 안정성의 문제, 아무리 법을 잘 만들면 됩니까? 집행력이 없으면 개정해도 소용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예, 하여간……

○**崔鉛熙委員** 자꾸 모범답안지 써준 걸 갖고 보지 말고 세제실장 정도면 우리나라 세제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한 그런 경제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세제개편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좀더 안정적인 세법운용이 되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세제운용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답변은 제가 듣고 싶지 않고 내년 말에도 또 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지금까지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각 법의 지원수단을 다 그 법에 모아 놓고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국회 때에 한번씩 개정……

○**崔鉛熙委員** 그 법 제외하고 나머지 법은……

○**財政經濟部稅制室長 金振杓** 하여간 최대한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리고 세제실장은 언제고 영전해가시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재정부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중에서 세제실장 자리에 가실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임기는 2004년까지입니다.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법사위에 그냥 있을 겁니다. 오늘 세제실장 답변은 속기록에도 기재돼 있고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이렇게 매년 법을 개정해야 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예측해서 한꺼번에 개정해서 정말로 납세자들 법적 안정성도 보장해 주

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제실장 그 점 명심하시고 재정부에서 오신 분들 이 중에서 세제실장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임기가 2004년이고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사위를 안 떠날 것입니다.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委員長 朴憲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대체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결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상속세법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교육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관세법개정법률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통세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전화세법폐지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寅鳳 위원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관해서 조세혜택을 달리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깊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오전 회의에서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우대 등 지역적으로 지원을 달리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寅鳳委員**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의 예정 시행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 것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이 있고 실제로 차관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헌법에 합치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정부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집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저 허약해져 가지고, 재경위에서 통과가 되어 오기는 왔는데 그 당시에 소신을 가지고 꾀꾀하게 밀었으면, 원래 정부안도 10%로 균일 감면안이었으면 관료로서 소신을 가지고 그 길로 밀었어야 되는데 결국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온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의 견해를 계속 주장하다 보면 소기업인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못 받을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법안을 항상 일찍 내세요.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촉박하게 해 가지고 결국 저희가 소기업 20%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도 누가 될지 몰라서 본 위원의 의견을 계속 내세우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법안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앞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견해를 소신 있게 미는 사람들을 오히려 든든하게 생각을 하지 그저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하는 식으로 해서 재경부에 맡겨 둔다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행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오전 발언 가운데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수도권의 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20% 가해지는 면이

또 연장되어서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관해서는 재경부에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세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간직해서 앞으로 세제를 만들거나 할 때에는 전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해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회부된 지 3일이 경과되지 않았습시다. 이 법률들 중에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6. 信用保證基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7.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8. 農林水産業者信用保證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9. 國民經濟諮問會議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 (14시45분)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18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鄭寅鳳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말씀하세요.

○鄭寅鳳委員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행정부가 시한을 마냥 늦추게 되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안상정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일깨워 주시고 훈계하신 후에 그다음에 의안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몇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국회법에 정한 대로 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오는 법안도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와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통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차관 나오셔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寅鳳委員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오전에 장관이 안 나온 이유가 기자회견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에도 계속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고 위원들의 양해를 받은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아마 식사를 같이 하신 모양입니다. 또 오시는 도중에 공교롭게도 오늘 노사정위원회가 3시에 바로 소집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가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우리 법사위에 재정부장관이 출석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陳 稔 장관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몇 차례 출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趙舜衡 위원님께서 그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재정부라고 해서 특별히 잘 안 나온다 하는 생각을 법사위원들이 가져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장관님께

꼭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알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14개 세법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은 앞으로 저희들이 세제운영이나 세정운영에 참고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등 신용보증 관련 3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의 개정은 중소기업, 주택건설업체 및 주택수요자,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하여 기본채산을 확충하는 한편, 보증기관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한을 하지 말고 영구히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의 개정은 대통령의 경제정책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현행 7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고 민간 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자문역할이 가능하도록 민간 위촉위원 중 1인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필요 시 회의를 소집·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으로 정부가 제출한 4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시다라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안건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안 제32조에서는 기금의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1항은 기금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금에 갈음하여 재판상 및 재판 외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무범위 내의 행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재판상의 행위는 다 할 수 있고 재판 외의 행위만 일부 제한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상의 행위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재판 외의 행위도 일부 제한된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단 모든 업무에 관해서 위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동조 제2항에서 일정 업무에 대한 행위는 못 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해서 우선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위탁 대상을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제2항 단서에서는 행위제한의 범위에 대해서만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10조의2에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대한 위탁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에서도 방금 보고드린 신용보증기금법과 동일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14조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대한 위탁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또한 위에서 보고드린 두 법과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鄭寅鳳 위원 질의하지지요.

○鄭寅鳳委員 우선 골자 중의 하나가 금융기관의 출연을 2000년 말까지 하다가 이것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예.

○鄭寅鳳委員 2000년 말까지 하는 것은 언제 규정되었던 것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매 5년마다 지금까지 시한을 연장해 왔는데 1979년에 제정한 이후에 계속 5년간 연장해 왔습니다.

○鄭寅鳳委員 결국 금융기관의 출연이라는 것이 계속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서 신용보증기금을 받쳐 주는 입장 아닙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생겼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낸 보험금 중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기관이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결국은 이것이 업무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한테 간편하게 신용을 준 다음에 부실대출이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손해를 보고 그것을 다시 메꾸어 가는 메카니즘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그렇습니다. 보험료적인 성격의 기금을 쌓아 놓고 만약에 금융기관의 대출에 부실이 날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보전을 해줍니다.

○鄭寅鳳委員 요즘 한빛은행사건과 관련되어서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도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몇 개 금융기관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전 금융기관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전 금융기관이 같은 비율로 출연을 합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연간 0.2% 정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무엇의 0.2%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기업대출금입니다.

○**鄭寅鳳委員** 기업대출금의 0.2%를 출연해서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별도의 견제장치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금융기관이 당연히 돈을 낸 사람이니까 신용보증기금 업무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자들이……

○**鄭寅鳳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을 신용보증기금에서……

○**委員長 朴憲基**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고 신용기금에서 국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런 견제……

○**鄭寅鳳委員** 금융기관 자체가 관여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말인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금융기관의 멤버가 와서 운영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마치겠습니까.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국민경제자문회의법개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맞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그렇습니다.

○**趙舜衡委員** 물론 법이라는 것이 시행하다가 보면 또 개정할 필요도 있고 개정하기 마련인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 93조에 의한 대통령에 대한 경제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에 근거를 둔 어떻게 보면 경제자문기구는 심의기구도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직위원 수를 7인에서 2인으로 하고 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핵심이 되는 사항인데 1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래서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趙舜衡委員** 1년 넘었는데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금년의 실적을 보면 대통령 주재의 회의를 두 번 했고 민간위원들끼리만 모여서 한 것이 일곱 번 했습니다.

○**趙舜衡委員** 일곱 번 모인 것은 대통령 주재가 아니니까 정식 회의가 아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그러나 이 회의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은 대통령께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두 번의 마지막이 언제 한 것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8월 23일입니다.

○**趙舜衡委員** 요새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8월에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법은 개정하고……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趙舜衡委員** 이것을 활성화시키십시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도 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하신 의견들이……

○**趙舜衡委員** 회의를 좀 활성화시켜서 필요할 때 하고 그래야지요.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寅鳳 위원 질의하시지요.

○**鄭寅鳳委員** 차관, 신용보증기금법 조문대비표를 보면 원안은 5년 연장해서 2005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예.

○**鄭寅鳳委員** 그런데 수정안은 그것까지 싹 없앤 것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재경위원회 심의과정에서……

○**鄭寅鳳委員** 그것도 또 재경위원회에서 없앤 거예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아까 제안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0년 동안 계속 연장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정착될 때까지는 오히려 시한을 박지 말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鄭寅鳳委員** 그러면 재정부에서 처음에 시한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저희는 기금이 적당한 규모가 되면 출연을 더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관점에서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이 계속 어려운 과정에서 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하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래서 결국은 재정부에서 5년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계속 개정을 하다가 보니까 자꾸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지 말고 아주 없애

버리자고 해서 없앤 것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정부에서도 일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가장 중요한 출연기관이 금융기관인데 그것을 없애기는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안은 그래도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추가 출연 필요가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재정위원회에서는 자꾸 구질구질하게 변명 같은 얘기하지 말고 아주 없애 줄게 해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네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5년 동안 하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계속 법률이 5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어야 하고 또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금융기관이 출연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출연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효율을 과거에는 0.3%까지 받았습시다마는 최근에 와서 0.2%로 낮추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는 낮추고 있는데 절대액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절대 대출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간 3000억 정도 수준으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李鍾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李鍾杰委員**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성 기타기금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그렇습니다.

○**李鍾杰委員** 기금정책과 관련해서 국회나 여야 할 것 없이 기금이 예산 외에서 움직이는 자금으로 봐서 예산이 일정 부분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예, 알고 있습니다.

○**李鍾杰委員** 그래서 신용보증기금도 이번에 사실 공공기금화하려다가 금융성 자금이라는 성격이 강해서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예, 알고 있습니다.

○**李鍾杰委員** 그 입장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물론 재정부에서 그때그때 신축적인 자금운용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사후에 통제되는 것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과 앞으로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차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예.

○**李鍾杰委員** 그렇게 되면 존경하는 鄭寅鳳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여태까지는 그래도 5년 단위로 제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재정위에서는 아예 그 기간마저도 삭제해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금융에서 중소기업자들의 담보부족문제를 당장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증지원 없는 순수한 신용대출이 정착될 때까지는 이러한 제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다만 기금의 운용 면에서 예컨대 출연요율을 조정하고 해서 사실상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鍾杰委員** 그러나 이것이 기간 제한 없이 액수의 제한 없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裁**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李鍾杰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용보증기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민경제자문회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預金者保護法中改正法律案 (대안)**(재정경제 위원장 제출)

(15시09분)

○**委員長 朴憲基**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5항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하여 洪在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濟委員長代理 洪在馨**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洪在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金滿堤 의원 등 11인의 찬성자 122인이 발의한 안과 洪在馨 의원 등 30인 외 찬성자 1인이 발의한 안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하여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추궁이 미흡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의사결정이 부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지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하고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책임 추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안과 2건의 의원안이 제출되었는바, 당 위원회는 3건의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 끝에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 및 그 지주회사 등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를 위

한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부실 관련자의 범위에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포함됨을 명백히 하고 셋째, 부보금융기관의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보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보금융기관이 가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당해 부보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보험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고려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 안 제29조에서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인의 명의를 예금가입인의 명의로 다를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예금의 형식적 명의로 실제 예금주가 다른 계좌 즉, 차명계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차명계좌의 효력문제는 일반적으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다룬 문제이고 이 법에서 보험금 지급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유인물 20쪽, 안 제31조제6항에서는 부보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6개월 동안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현재의 표현만으로 볼 때는 보험금 지급 보류대상이 부실 관련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실 관련자가 있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 전체에 대해서 지급보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입법취지에 맞게 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유인물 27쪽, 안 제41조 및 제42조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발하는 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상태 조

사에 대해서 거부 방해 등을 한 자에 대해서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정명령이나 처분 등에 대해서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마저 제약하는 것으로서 형사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는 점이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이 법에서도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규정하도록 하였고, 유인물 9쪽, 안 제30조제5항에서는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납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안 부칙 제2항에서 이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해서 이미 체납되어 있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鉛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鉛熙委員**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안 제30조제5항에서 미납 보험료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변제를 받는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국세, 지방세 다음 순입니다.

○**崔鉛熙委員** 그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예.

○**崔鉛熙委員** 다음에 안 제29조 관련해서 차명계좌인 경우에 단순히 검토보고서는 이 법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首席專門委員 金會瑄** 차명계좌의 효력을 일부 부인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인데 지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차명계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이자에 대해서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보험관계를 부정함으로써 차명계좌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체계하고는 조금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崔鉛熙委員** 그래서 묻는 것인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고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이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오히려 더 특별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

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차명계좌의 효력 자체를 이 법에서 부인함으로써 법 간에 상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토보고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내든지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지만 조금 더 검토해보아야 되겠어요.

○**委員長 朴憲基** 그럴 것 같습니다. 보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崔鉛熙委員** 차관 답변을 우선 들어 볼까요? 차관 답변해 보시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었습시다라는 법률적으로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崔鉛熙委員**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 재경위에서 그냥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어온 것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이것이 의원입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崔鉛熙委員** 아니지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재경부 소관 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하고 저촉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거기에서 수정이 되었어야지요.

요즘 타 상위에서 문제가 되어서 해결이 잘 안 되면 법사위에 넘어가면 절로 해결되니까 넘겨보자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급한 법이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예,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매일 급하다면서 문제 있는 법을 그냥 올리면 어떻게 해요?

○**咸承熙委員**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여러 가지 부실기업주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빨리 좀……

○**委員長 朴憲基** 金容鈞 위원 질의하시지요.

○**金容鈞委員** 41조 42조에서 전문위원이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참 망조가 든 것이 내가 내 돈을

금융기관에 맡겼는데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거 완전히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부실 금융기관이 재산상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과태료 정도로 처벌한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발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하는 것은 좋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서류를 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은닉하거나 은폐하거나 재산상태를 속이거나 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극형에 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태료 정도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소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委員**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예, 咸承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咸承熙委員** 처벌법상에도 조세관계 서류를 은닉하거나 할 때 처벌규정이 있듯이 그것을 감안해서 소위에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고발할 때,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 와 계시지요? 과거에 보면 회사정리, 파산단체에 있는 금융기관의 마지막 임원에 대해서만 전 책임을 지웁니다.

그런데 그 임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과거에 어떤 행장이면 행장, 금융기관의 장이 상당히 해 주어서는 안 될 대출을 상당부분 해 놓았어요. 후임자가 와서 보니까 일시에 회수를 하거나 대환을 해 주어서는 당장 부도가 나고 사회적인 파장이 생길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더 좀 해 주면 회생을 시켜서 좀더 회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몇 푼 더 해준 게 물려 가지고 부도가 되면 마지막 부도낸 그 사람만 전 책임을 지고 그 앞서있던 사람들은 전부 면책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실이 발생하면 부실원인을 철저히 추궁해서 앞서있던 사람들 전부를 철저히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우리 민법 논리상으로 얼마든지 불법행위 공동책임을 연대책임 지울 수 있지않아요. 그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제대로 좀 하도록, 저지르기는 앞 사람이 저질렀는데 왜 막차 탄 사람이 늘 손해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공적자금이 제대로 쓰이는가 하는 부분도 요즘에 시중에 책임론이 문제됩니다만 그것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항상 마지막 사람이 책임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왕 어차피 소위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니까 좀 반영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財政經濟部次官 李晶載** 인과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35항 예금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0.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 (정부제출)

### 21.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5시23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지방 군부대에 위문 가서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이 대신 설명해 주십시오.

○**鄭寅鳳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예.

○**鄭寅鳳委員** 장관이 국회를 앞두고 지금 지방 위문을 가신 거예요?

○**教育部次官 金相權**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鄭寅鳳委員** 지금 어느 부대에 갔습니까?

○**教育部次官 金相權** 백령도에 가셨습니다.

○**鄭寅鳳委員** 2박 3일로 가신 거네요?

○**教育部次官 金相權** 아닙니다. 아침에 가셨다가 5시 반에……

○**鄭寅鳳委員** 지금 저희 위원장님 인격만 믿고 이렇게들 그냥 사전 양해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법안들을 앞두고…… 위문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 자기 일들을 장관이 안 챙기고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나오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教育部次官 金相權**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寅鳳委員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허용 안 한다고 꼭 전해 주세요.

○教育部次官 金相權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법안심의 때에 장관이 나오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관께서 장관한테 鄭 위원이 지적하는 그와 같은 뜻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教育部次官 金相權 교육부차관입니다.

장관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이 2000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秉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인물 5쪽, 안 제25조4항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교부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게 “교부에 따른 배분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鄭寅鳳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寅鳳 위원 질의하시지요.

○鄭寅鳳委員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제안하셨지요?

거기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해서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3년 동안 연장하자, 지금 이런 취지 아닙니까?

○教育部次官 金相權 예.

○鄭寅鳳委員 그러면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해서 해산된 학교법인이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개의 학교법인이 해산이 돼서 청산 중에 있습니까?

○教育部次官 金相權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세 사립학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명 이하의 초·중·고 학교 수가 총 135개 교로서 1년에 135개 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71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산 종결이 된 법인 수는 2개 법인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법인은 5개 법인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 수의 격감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教育部次官 金相權 저희가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증여세 관계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법인 해산 시에 이중과세가 되었는데 법인에 대한 과세는 면세조항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영세 학교법인의 통폐합은 상당히 가속화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런데 영세 학교법인의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기는 하겠지만 교육부가 어떤 때에는 그 대세에 거역을 한다고 할까, 대세를 바로잡아서 실제로 지금 지방에 거주하면서 학업에 애쓰는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노력

하는 것도 병행이 되어야지 그냥 영세학교의 통폐합만으로 소위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애정과 배려가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에 관한 시한을 연장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이것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저희가 듣기에 프랑스의 어느 대학은 4명밖에 없는 학생을 위해서 10명의 교수들이 히브리어를 가르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면서 미래를 가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통폐합 과정에서도 지역적으로 소외되어서 사는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教育部次官 金相權** 존경하는 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법인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영세학교라도 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도저히 분산시킬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의 영세학교는 존치하도록, 그러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신경과 노력을 다 쓰겠습니다.

○**鄭寅鳳委員** 그리고 이게 의안과는 관계가 없는데 교육부랑 관계돼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소위 교육방송, EBS랑 관련이 돼서 지금 방송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EBS를 폐쇄를 시키자 이런 견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 문화관광부랑 교육부랑 서로 지금 책임의 소재도 애매하게 이렇게 물려서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EBS라는 게 교육방송 아닙니까? 교육방송이 순전히 그 채산성만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강의를 종전에 다섯 시간을 배정했던 것을 세 시간으로 줄이는 이런, 소위 폭거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과 통신에 의존해서 어렵게 공부하

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정부가 이런 일에 실제로 나서지 않으면 그 바쁜 학생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일부 자기들의 근거로는 소위 위성방송이 조금 넓어졌다 이러는데 실제로 벽지나 이런 데서 못 듣는 경우도 많고요. 더군다나 라디오방송만이 갖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게 단순히 문화관광부의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부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이게 지금 교육방송의 문제는 방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문제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채산성, 그다음에 광고가 있다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줄여서 다른 방송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학교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 같은 데서는 방송통신의 방법에 의한 교육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또 일부 희귀한 언어에 대한 학문을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상당한 방송시간을 확보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방적으로 그저 눈앞의 채산성만에 의존해 가지고 이러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얘기한 학생 수의 격감에 따른 학교의 폐쇄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셔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교육방송 측이랑 서로 이야기할 것은 하고 또 문화관광부랑 협의할 것은 해서…… 학생들이 도대체 공부하는 하고 싶은데 강의시간이 없어서 또 라디오로 방송을 해주지 않아서 공부를 못 배운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앞날이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憲基** 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해야 될 법안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5시에 본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해 법안에 관해서 또 우리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체계·자구 심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咸承熙委員** 鄭寅鳳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언제 한번 대면보고로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지요.

○**教育部次官 金相權** 알겠습니다. 각별하게 챙기고 자상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咸承熙委員** 저는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과  
추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  
회안을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 畜産法中改正法律案 (대안)**(농림해양수산위  
원장 제출)

**23. 山林法中改正法律案 (대안)**(농림해양수산위  
원장 제출)

(15시39분)

○**委員長 朴憲基** 농림부장관이 출석하셔야 됩니  
다. 마는 조금 전에 2시에 오셔서 아마 오늘 농림부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장에게 양해를 구해 왔기 때문에 양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  
사일정 제23항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  
회를 대표해서 鄭長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鄭長善** 농림해양수산위  
원회 鄭長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산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개의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의 경  
우 당 위원회에 회부된 李康斗 의원이 대표발의한  
송아지생산안정에관한법률안, 張正彦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로부터 제출된 축  
산법중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안에 대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며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경  
우도 鄭長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정부가 제  
출한 법안 등 2개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안  
으로 제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축산법중개  
정법률안과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우리 위  
원회에 회부되었던 3개의 법률안과 2개의 법률안  
을 토대로 하여 각각 성안하였으며 기타 법률안심  
사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보완된 내용을 추  
가해서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  
씀드리면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  
방과 대형화·표준화되어 가고 있는 대내외적 유통  
여건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  
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추진을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축산정책을 자금 측면  
에서 뒷받침하는 축산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용·관리의 효율성  
을 제고함으로써 적정규모로 한우산업 기반의 안  
정적 유지를 통한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축  
산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개  
정하려는 것입니다.

축산법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송아  
지생산안정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의무화하며 사업시행 주체를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에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가 부담하는 금  
액을 안정자금 지급 한도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제  
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기준 가격 등의 심  
의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토  
록 하였습니다.

넷째,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판정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  
습니다.

다섯째, 축산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  
하여 동 기금의 관리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서 농림부장관으로 변경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전문성 및 축산농가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농협중앙회로 위탁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도를 설치하는 때에는 미리 임도설치의 필요성, 임도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도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여 산림에 적합한 임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는 산림의 입목벌채,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분할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서 산림의 입목벌채, 형질변경 시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림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유림에 대한 造林貸付 및 分收林設定制度를 도입하였으나 현재 산림녹화사업이 마무리되었으므로 국유림에 대한 조림대부 및 분수림설정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넷째,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의 효과적인 보전과 허가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림형질 변경 및 채석허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림청장이 수립·통지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체계를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여섯째, 산불은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이 관할구역 안에서의 소관 산림에 대한 산불진화에 관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형산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산불 진화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전문위원입니다.

축산법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법률안으로 되어 있는 농림부소관 검토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 안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정사의 면허자격의 하나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분야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를 보시면 기술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산업기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각각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 산업기사 자격”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6쪽, 안 제26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방법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되어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동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등 유인물 중 주석한 바와 같이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8쪽, 안 제29조의2제2항제1호는 등급판정사의 자격요건의 하나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졸업예정자”라는 개념은 특정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인 교원자격검정령 등 다른 법령을 보면 “졸업자”에 한정할 뿐만 아니라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법문을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법 제4조제1항을 보면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쪽, 안 제102조의2제3항은 “산불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산불진화에 관한 통합적인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대형 산불에 대한 기준이 농림부령에 포괄위임되어 있는 점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법문을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경우……”로 적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15쪽, 안 부칙 제2조는 임도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제원칙상 “적용

례” 규정이 적절하므로 이에 맞추어 유인물 중 주  
서한 바와 같이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  
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축산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  
일정 제23항 산림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농작물재해보험법안(정부제출)**

**25. 人蔘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26. 環境農業育成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5시49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24항 농작물재해보험  
법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의  
사일정 제26항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부차관 나오셔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  
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部次官 金東根** 농림부차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법안,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 환  
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을 모시고 농작물재해보험법안, 인삼산업법중개정법  
률안,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법안은 태풍, 우박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함  
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재생산활동을 보장  
하기 위하여 보험대상작물 선정·대상재해 범위·재  
정수지 등 중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농작물피해  
보험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농협중앙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자로 규정하고, 농업인 기타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  
가인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손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료와 운영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  
원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시행에 관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삼류 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  
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인삼제품류를 제조·가  
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등을 따  
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고려인삼 등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는 이 법  
에 의해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해 등록한 후 사용토록 일원화하  
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  
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자  
가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고 용기·포장 등에 친환  
경농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이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부장관 등으로  
부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아야만 이를 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표시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  
이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  
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  
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법률안이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제안설명드린 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농작물재해보  
험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위임하고 있어 적절하  
지 아니하므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위원회 위  
원의 수,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  
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리하였습  
니다.

유인물 10·11쪽,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를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범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장에 백지위임된 것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61조(제107조·제112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의하여 공제모집인으로서 농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 안 제13조에서는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보험대상농작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농업인의 보호라는 이 법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있어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바, 안 제13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 별칙사항입니다.

보험업법 제144조의 규정은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8조는 제1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보험은 안 제16조에 의하여 보험업법의 규정이 일부 적용되기는 하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험업법에서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보험을 모집한 경우에 대한 별칙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에 제1호를 신설하여 이 법에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28쪽, 안 제12조제1항 본문은 인삼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그가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까지 겸업할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나 신고의무사항과 신고가능사항을 하나의 법문에 동시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원칙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대한 겸업신고사항을 따로 제4항으로 신설하는 등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법문을 신설·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26쪽, 안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이나 동법 동조동항 본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동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동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농림부령이 정하는 지리적 표시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26쪽, 부칙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28항으로 상정예정인 수산물품질관리법률안의 부칙 제8조에 보면 동법의 제명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그 시행일이 이 법의 경우 2001년 7월 1일이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는 2001년 9월 1일로 서로 다르므로 그 입법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법안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제4조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쪽, 안 제17조의5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와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행위도 식품위생법 등 입법례에 따라 포함하도록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31쪽, 안 제17조의7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양도·상속·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대인적 효력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자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대물적 효력이므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치로 안 제18조제1항(유인물 32쪽)과 안 제24조(유인물 35쪽)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라는 표현에 대하여 이를 삭제하는 대신 “농림부장관의 명령의 수령자”(안 제18조) 또는 “청문대상자”(안 제24조)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법문을 “인증품을 생산한 자”로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35·36쪽, 안 제25조제5호의 규정에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5조의2제1호의 규정에서는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행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므로 이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20쪽, 부칙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인삼사업법증개정법률안의 부칙에서와 같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용어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함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容鈞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환경농업육성법증개정법률안의 17조의7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행하는 인증은 대물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해서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왜 그런고 하니 농촌에서 대대로 농업후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후계자가 그 인증을 바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요. 별도의 인증절차를 밟는 행정의 어려움이 이중으로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 조항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의 상속인이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농업후계자가 그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한다는 조건에서 바로 인증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鉛熙 위원 말씀하세요.

○**崔鉛熙委員**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金容鈞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그것을 순수한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전통적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은 기능에 대한 보유 자체를 보호해야 될 측면도 있고, 또 전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잘라서 대물적 처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인적, 대물적 처분을 혼합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전문위원한테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 점에 관해서 차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農林部次官 金東根** 저희 부로서는 똑같은 집에서 생산한 것을 다시 신청하게 되면 그 절차의 복잡성도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專門委員 金鍾斗** 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자체가 농산물에 관한 효력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상속한 자는 아무런 그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주기 때문에 상속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받는 절차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그때도 정부기관에 동의했습니다. 주무부처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의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金容鈞委員** 그런데 농업기술기능 노하우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委員長 朴憲基** 노하우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양수인이나 합병될 때는 승계되지만 상속인에 대해서는 승계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하우가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물적 소유권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金容鈞委員** 상속, 양도, 합병 세 가지로 해 놓았거든요. 상속의 경우에 특별히 그것을 다시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농민후계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꼭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상속인이 그 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한 다든지 해서 자동 연결이 되도록 해 주어야지요.

○**委員長 朴憲基** 차관님, 친환경농산물 인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農林部次官 金東根**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기관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품질을 보장하는 인증마크를 저희들이 찍어 주고 품질을 보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그것이 농산품 자체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農林部次官 金東根** 농산물 자체를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裴基善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천사과가 무공해 친환경 농산물이다 해서 그것을 인증해 주었는데 그것을 재배하던 김모 씨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사과밭을 재배하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인증해 준다 그런 뜻이지요?

○**農林部次官 金東根** 그렇습니다.

○**裴基善委員**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대로 해 주어야 될 경우가 있고 동일한 장소와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몰라도……

○**委員長 朴憲基** 상속인이 농장을 경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적인 상속인이라고 하면 미국에 살아도 상속인이고 영국에 살아도 상속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동일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대로 인증하되 조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 경우에는 다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농장이면 농장이고 사업장이면 사업장을 인수하는 상속인 같으면 모르지만 상속인이 여러 사람 되는데 상속인 모두에게 인증한다 하는 것은 이론상 전문위원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金容鈞委員** 그래서 제 의견은 구체적으로 17조의7을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이 양도, 합병 등이 있거나 상속인이 그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도하고 합병을 앞으로 빼 주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委員長 朴憲基** 어떻습니까? 농림부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으시겠지요?

○**農林部次官 金東根** 없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이 점은 전문위원과 金容鈞 위원과 崔鉛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자구수정하는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자구를 수정해서 그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趙舜衡 위원 질의하시지요.

○**趙舜衡委員**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서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편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 인삼제품류도 식품이지요?

○**農林部次官 金東根** 예, 식품입니다.

○**趙舜衡委員** 식품이면 당연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삼제품류만 따로 떼어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신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農林部次官 金東根**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식품이니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農林部農産物流通局長 蘇萬鎬** 유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홍삼, 백삼, 태극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신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 백삼, 태극삼 같은 삼을 생산하고 남은 물건을 가지고 인삼분말류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나 허가를 받을 경우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의제처리하겠다 하는 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舜衡委員** 이것도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품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인삼산업법 정의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삼제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특례를 해 가지고 신고만 해서 허가를 의제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불량·부정식품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부정식품을 일소하겠다고 총력을 기울여서 범정부적으로 한다고 그 래 놓고서 한쪽에서는 규제개혁 완화니 폐지니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을 집행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습니까?

○**農林部農産物流通局長 蘇萬鎬** 협의가 되었습니

다.

○趙舜衡委員 뭐라고 그러니까?

○農林部農産物流通局長 蘇萬鎬 기준도 같고 식품위생법과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국민의 위생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趙舜衡委員 아니, 이게 사람이 먹는 것 아니에요?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했다고 하지만 식품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안 받게 하고, 아니 불편한 것은 이것을 만들고 사업하는 사람들만 불편하지 국민들이 왜 불편합니까?

○農林部次官 金東根 제조하는 업자가……

○趙舜衡委員 일반 소비자는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 불편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규제개혁이 됩니까?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덜어 주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자들이 불편한 것이지, 아니 자신들을 위해서도 허가받는 것이 낫지 신고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을 다 질 것입니까? 오히려 잠시 불편하고 허가받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農林部次官 金東根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를 하도록 했고 관리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趙舜衡委員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라든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행정규제개혁의 일부가 됩니까?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인삼류라는 것이 수백, 수천, 수만 개 식품 중의 한 개에 불과한데 어떻게 기본법을 갖다가 마음대로 개정합니까? 이것은 법체계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憲基 咸承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咸承熙委員 저도 趙舜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맥을 같이합니다. 인삼은 식품공정상 식품입니까?

○農林部次官 金東根 그렇습니다.

○咸承熙委員 그러면 인삼은 어느 단계에 가서 약품이 됩니까? 인삼 말린 것을 썰어 가지고 한약제를 지으면 그것은 약품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식품인 동시에 약의 원료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약입니까?

○農林部農産物流通局長 蘇萬鎬 예를 들면 인삼 뿐만이 아니라 대추 같은 경우도 농산물로 유통되면 농산물이고, 한약방에서 한약제로 쓰면 약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인삼류는 홍삼, 백삼 같은 것도 이미 인삼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인삼과 거기에서 생산된 부수되는 생산물을 같이 관리하게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안이 됐고……

○咸承熙委員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약제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대추하고 인삼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그러면 계속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가 한약제 첩약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예컨대 대추하고 비교하지 말고 녹용이나 사향, 우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슴 머리에 있을 때에는 동물의 일부이고, 언제부터 약제가 됩니까? 약제가 되면 위생상태, 유통이라든가 제조허가 등등 약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식품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대추 정도로 취급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農林部次官 金東根 약품의 제조과정에 원료로 들어가서 약품이 제조되는 단계부터는 약품이 될 테고……

○咸承熙委員 그러면 한약방에 가면 약제를 넣는 함에 인삼이 들어 있으면 그것인 식품이오, 약품이오? 그러면 그것이 한의사에 의해서 첩약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약품이오?

○農林部次官 金東根 한약방에서 할 때에는 그것은 약제의 원료로 보아야 되지요.

○咸承熙委員 그러면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식품이 되었다가 약품이 되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되었다 그런 것입니까?

○委員長 朴憲基 당해 법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법사위에서 지켜보면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새로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개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다고 마구 따라가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도 사실 소방법 개정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러브호텔도 건축법 개정의 규제개혁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趙舜衡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마구 이렇게 개정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국민 보건·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崔鉛熙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鉛熙委員 12조에 보면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는 데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農林部次官 金東根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러니까 인삼류 제조업을 하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가지고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는 자는 신고만으로 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항에 보면 역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인삼제품류의 제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품위생법 21조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지않아요?

○農林部次官 金東根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답변하셔야지요. 행정규제개혁보다는 적어도 인삼류 등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제한이 있지요?

○農林部次官 金東根 그렇습니다. 엄격한 시설기준이 있고 벌칙도 있습니다.

○咸承熙委員 식품위생법에 허가 아닌 신고로 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農林部農產物流通局長 蘇萬鎬 농축인삼류라든지 인삼분말류 등 15개 품목이 있는데……

○咸承熙委員 인삼말고 다른 유사한 제품이 신고로 제조·가능한 예가 있습니까?

○農林部農產物流通局長 蘇萬鎬 제조·가공업이 대부분 신고체제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農林部次官 金東根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는 지금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양쪽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의제해서 신고를 우리 쪽에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신고를 안 하게 됩니다.

○咸承熙委員 오신 분들이 취지를 모르고 있는데 자꾸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규제완화를 빙자해서 국민의 보건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허가를 신고로 바꾸고 이러면 훌륭한 행정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식품도 이미 가공하는 데 있어서 신고로 족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라니까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委員長 朴憲基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농작물재해보험법안, 의사일정 제26항 환경농업육성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삼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7. 水産業協同組合法中改正法律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이방호·장성원·장정연·정철기·정장선·문석호·강현욱·박용호·최선영·박희태·김용학·주진우·박재욱·이정일·김경천·김원기·전갑길·윤철상·정세균·이낙연·김효석·윤한도·김광원·이용삼 의원 발의)

(16시23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27항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대표하여 李方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委員長代理 李方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李方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국가 등의 공적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부문 및 신용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함으로써 중앙회 및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52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협중앙회에 대해 출자를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중앙회의 각 사업부문별 독립성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제 및 신용사업의 사업부문별 소이사회를 설치하고 소이사회에서 소관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경제, 신용, 지도사업별로 자본 및 예산, 결산을 구분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부문별로 인사상의 독립성을 가지도록 각 소관 대표이사가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전보·승진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실 회원조합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여 경영이 부실한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저희 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를 조정하고 재산분리의 주체와 중앙회 미처리 결손금의 처리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률안은 수협중앙회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과 독립사업부제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어업인들의 협동조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법안의 취지와 심의경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128조제5항에서 “회장은 대표이사가…… 그 임기중이라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안 제115조제1항제3호에서 보시면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총회의 의결사항이므로 당해 법문을 “회장은……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부칙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1조의 단서와 제2조의 경과조치의 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임원의 선출과 이에 따른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만료에 관하여 시행일의 예외와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 입법의 취지가 이 법 시행 당시 임용 중인 이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로 하되 새로이 선출되는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안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조항을 입법원칙에 따라 적용례 조항으로 명명하며 안 부칙에 제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鉛熙 위원 질의하시지요.

○崔鉛熙委員 수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체제대로 바꾸는 것이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조금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회장은 상관없이 경제사업부문하고 신용사업부문의 대표이사를 별도로 두는데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장은 직원의 임면권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습니까?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신용사업부문, 경제사업부문 각각의 대표이사가 독자적으로 행사합니까, 아니면 회장의 동의나 승인하에 행사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수산정책국장입니다.

독립 사업부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독립회사 대표이사가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崔鉛熙委員 그러면 회장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만 총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임면권에 대한 권한은 없네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예, 그렇습니다. 다만 경제사업부문하고 신용사업부문의 간부직원에 대해서 인사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사업부문의 임원들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를 원활하

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부령으로 인사조정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거기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崔鉛熙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수산물품질관리법안(정부제출)

29.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30. 漁港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31. 航路標識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32. 港灣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33. 韓國海運組合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34. 船舶職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16시30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28항 수산물품질관리법안,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어항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항만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산물품질관리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다수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국제관리기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어업인의 자생적 기

반을 마련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으로서 생산자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단계 등 각 단계별 위해요소와 중점관리사항을 정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에서 구매·비축하거나 협약 등의 이행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 여부, 위해물의 혼입 여부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기관에 폐기·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중금속·패류독소 및 항생물질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출하연기·용도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朴憲基 위원장, 咸承熙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遊漁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부실하게 운영되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이 불법인 때나 설립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지한 때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어업권자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셋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遊漁場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법령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 및 관리가 소홀하였던 어촌의 소규모 어항을 이 법의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제1종 어항, 제2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으로 분류되던 어항의 종류를 앞으로는 개발 및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으로 분류하고 어촌정주어항을 신설하여 법령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어촌의 소규모 어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항개발계획은 관리청이 수립하도록 하되 수산업의 진흥 및 어촌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둘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위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되 일정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항로표지 관련 장비 및 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자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이 우수한 장비 및 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항만 내 어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예산사용료 신고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합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제사업의 재정적 독립을 통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원의 복리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상교통안전법령에 의하여 2002년 7월부터 내항 운항선박 및 사업체에 대하여도 안전관리체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조합의 사업범위에 선박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업무 등을 추가하고 둘째, 조합이 재해발생 시 충분한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공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토록 하고 공제사업은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하였으며 셋째, 조합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해사기구에서 1995년 7월 개정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으로써 국제항행과 관련한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선박직원의 해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기사 면허발급을 위한 승무경력에 육상에서 근무한 경력 일부를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국제협약의 내용에 따라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하였으

며 둘째, 외국으로부터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해기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면허요건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받은 면허가 취소·철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에 근거하여 발급한 국내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제항해에 승무하는 동안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제협약의 내용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 소관 7개 제·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췌록 이들 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咸承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수산물품질관리법안 등 7건의 법안에 대하여 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 안 제2조제4호는 “수산가공품”의 용어 정의를 하면서 동호 후단에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원칙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을 용어 정의에 포함하여 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주서한 바와 같이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 안 제4조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나 동 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26쪽, 안 제29조제2항은 “해양수산부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법문 표현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검사인력 또는 검사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같은 취지로 안 제34조제2항과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도 법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쪽, 안 제55조제3항에서는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채취방법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제8조, 제41조, 제44조의 규정을 배제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에 한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21쪽, 부칙사항입니다.

안 부칙 제4항은 다른 법률의 개정조항으로 어장관리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법은 안 부칙 제1항 단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미시행법률의 개정예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법문 표현을 입법원칙에 부합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어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7쪽, 안 제4조에서는 관리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적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제7조 본문에서는 관리청이 개발계획의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단서에서는 2 이상의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안 제4조의 관리청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상호 저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 안 제7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3쪽, 부칙사항입니다.

안 제37조 제1항제2호에서는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도 얻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이 법안에 의하여 새로이 의제되는 내용이므로 이 법 시행 당시 당해 의제규정이 적용될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그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안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같은 쪽의 부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의 주체를 관리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43조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을 부과 징수의 주

체로 규정하고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과 징수권자가 변경되고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에 따라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향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 안 제3조의3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조항입니다마는 이 법에 의한 설치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 개별 법률에서 받아야 할 허가 등의 의제규정은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법률 상호간의 체계에 있어서 적합성을 유지하고 각 개별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도록 한 취지를 해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이러한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8쪽,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박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위임되고 있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으로 예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항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쪽, 안 제6조제1항제15호의2에서는 재공제 등의 위탁자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사업자·공제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외에 개별법률에서 보험사업자는 아니지만 보험법의 일부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의한 선주상호보험조합·공제사업자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 안 제9조제1항제2호는 외국에서 받은 면허가 취소, 철회 또는 정지된 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취소나 업무의 정지 또는 견책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취소·철회·정지 간에 그 제재에 있어서 차이를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취소·철회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동조에 제2항을 신설, 정리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 안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기타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라는 표현은 법문상 명확하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같은 취지로 동조 동항 제3호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代理 咸承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李柱榮 위원 질의하시지요.

○李柱榮委員 수산물품질관리법 11조,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에 관해서 1항에 보니까 그 표시는 수산물에 국한해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0조나 9조의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에 보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도 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전자 변형수산물의 경우에도 유전자 변형수산물이 함유된 가공품이 있을 텐데 그것은 표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수산정책국장姜武賢입니다.

이것이 물론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가공품도 표시해야 되고 수산물도 표시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공품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소관사항입니다.

○李柱榮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전자 변형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 인체에 해독을 끼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의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품에도 똑같이 표시해 주어야 옳지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예, 맞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을 넣어주세요. 물론 이것이 식품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 가공품도 여기에서 원산지 표시, 지리적 표시를 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유전자 변형수산물의 함유 여부도 같이 표시해야 옳은 것 같은데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래서 여기에 규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가공품의 유통에 관한 검사라든지 이것의 소관 법령은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9조 10조에서는 왜 가공품의 경우에도 원산지표시, 지리적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생산단계는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에 관한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산단계까지는 저희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유통단계에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데 식품위생법에는 원산지표시 규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의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고 원산지 표시로서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이 법에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생산단계에서 저희들이 관장하기 때문에……

○李柱榮委員 유전자 변형 수산물 표시는 생산단계에서 이게 표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그래서 요번에 품질관리법에서 여기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李柱榮委員 11조에 보면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래서 생산 또 판매 또 판매목적의 보관·진열 그런 모든 행위들을 열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다 이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는데 체계상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다 같이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참 묘하게 돼 있습니다. 가공이 되고 나면 식품위생법, 식품안전에 관한 부분은 가공품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가고, 가공되기 전 단계까지는 이 법으로 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는

식품위생법에는 없기 때문에 가공품이라 할지라도 원산지에 관련된 것은 이 법에서 다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수산물에 관한 한……

○李柱榮委員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보면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썄, 이런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데……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예, 그렇습니다.

○李柱榮委員 우리도 헷갈릴 정도로……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저희 부에서는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위생검사라든지 안전성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해 봐도 유전자변형수산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 표시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리고 33조2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네.

○李柱榮委員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수산가공품을 폐기, 판매금지해야 되는 것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여야 한다’ 의무화시키는 조항이 더 실효성 있는 조항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임의적인 것으로 해 놓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것은 위원님 의견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柱榮委員 그러면 그걸 좀 고쳐서 ‘하여야 한다’로,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발견되면 없애야 될 건데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예, 알겠습니다.

○李柱榮委員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咸承熙 그렇게 정리하지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咸承熙 崔鉛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崔鉛熙委員 어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요. 지금까지는 국가관리하에 있는 1종항, 광역자치단체의 관리하에 있는 2종항 그 외에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 3종항 이렇게 구별했는데요. 보니까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1종, 2종, 3종 지금까지 구분하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1종은 국가이고 2종은 지방광역어항인데 3종은 일종의 긴급피난항으로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업에 이용하거나 선박의 입출항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피난항으로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1종, 2종, 3종말고도 작은, 이제 앞으로 어촌이 관광이라든지 정주생활권으로서의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서 소규모 어항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주체가 애매하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 바깥에 있었는데 그것을 안에 집어넣으면서 이제 국가어항, 지방어항 이렇게……

○崔鉛熙委員 이게 잘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어항이 많은데 갈 때마다 포구들 있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崔鉛熙委員 포구들, 어업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진 항만도 3종항에도 들어가지 않고 단순한 포구 정도에 불과했는데……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崔鉛熙委員 그 어촌지역에도 이제는 정부에서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어항, 지방어항 하는 게 옛날의 1종, 2종항하고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 아까 정책국장 답변해 보세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수산정책국장입니다.

요게 이렇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포구에 관해서는 관리주체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항·

포구에 관한 관리도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별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1종어항하고 3종어항을 합쳐서 국가어항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2종어항은 지방어항으로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이관 받은 항·포구의 관리·운영은 국가 정주어항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崔鉛熙委員 종전의 1종, 3종항이 국가어항으로 되고 종전의 2종항은 지방어항으로 되고 그다음에 항·포구 어업인들이 거주하는 것은 어촌정주어항, 이렇게 됐다 이거지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로부터 저희들이 이관받은 항·포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개발이 필요한 항·포구들을 선정을 해서 다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崔鉛熙委員 해수부에서 개발을 책임진다 이 말이지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예, 그렇습니다.

○李柱榮委員 식품위생법 몇 조에 있지요? 가공식품유전자변형……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찾아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咸承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鍾杰 위원님!

○李鍾杰委員 지금 우리 존경하는 李柱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인이 알기에 수산물도 하나의 식용이기 때문에 식품과 수산물의 구별이 불명확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제7장에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그래 가지고 42조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예컨대 저번에 납꽃계 사건이 있었지요? 그게 지금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서 서로 업무영역이 불명확해서 좀 문제가 됐던 점을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수산물도 식품으로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공품이라든지 다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유해성을 다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어떤 법률정책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성 조사에 관련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

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수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李鍾杰委員** 수산물 검사소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李鍾杰委員**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와 별도의 식·의약품안전청이 식품에 관한 모든 안전성, 유해성에 관한 어떤 독성, 기타 이런 모든 검사에 관한 책임과 또 시설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산물 안전성조사도 궁극적으로는 식약청에 가서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동안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식약청의 위임을 받아서 수산물검사소가 수산물에 관해서 검사업무를 해 왔었는데 그 검사업무를 범위는 결국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1차상품 상태까지만 하고 그것이 가공되어서 2차상품으로 가면 그것은 식약청 관할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단속할 때 합동단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업무영역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李鍾杰委員** 지금 식약청이 항만에도 지방식약청 이래 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소위 공산품이 들어올 때는 식약청이 검사하고 가공되기 이전의 1차상품 그러니까 고기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수산물이 되고 이렇습니다.

○**李鍾杰委員** 그러면 그게 국가산업의 중복투자라든지 기관의 어떤 중복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 점 때문에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수산물검사소를 식약청 쪽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수산물에 관한 품질관리라는 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안전성 관리가 되고 일면에 있어서는 수산물의 생산자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하자면 안전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줌으로써 생산자에게 생산활동을 지지해 주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보통 식약청에는 관리하는 것은 완성된 제품, 정지된 상태에서 완성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경우에는 재배·양식하는 과정에서, 약품 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재배과정의 안전성 부분이 함께 개입되기 때문에 결국 수산물의 양식관리라는 일반 우리 수산업무와 안

전관리라는 업무가 전부 이렇게 결합돼 있습니다.

(咸承熙 간사, 朴憲基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산물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유기농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안전성에 있어서 유기농산품을 관리한다는 것은 안전성 관리와 더불어서 생산관리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결합돼서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식약청에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를 위하고 소비자를 위하고 또 안전성을 함께 이렇게 결합돼서 생산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식약청으로 합치기에는 어려운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李鍾杰委員** 어차피 42조에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패류독소 이런 것은 최종 물건이건 아니면 수산물이건 간에 그에 대한 독성, 함유된 금속류에 관한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李鍾杰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한 기관에서 식품, 수산물, 농산물의 유해성, 안전성을 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한 기관에서 전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국가운영상 낫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저도 그렇게 보았었는데 기관이 중복돼서 이게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기관은 따로 있어도 다루는 물품들이 너무 다르고 해서 기관을 합친다고 해서 인력이 더 줄어든다든지 그 밖에 기구가 줄어든다든지 할 만한 여지는 거의 없고요. 반면에 이것을 합쳤을 때 말하자면 생산과정에 사전부터 개입해서 말하자면 안전성이 있는 그리고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의 지도라든지 이런 업무는 식약청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기술지도와 함께 일종의 기술지도 그런 성격이 함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것은 결합시켜 나가야 된다 해서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조금 이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李鍾杰委員** 현재 해양수산부에 설치돼 있는 수산물품질검사소를 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비브리오팀, 패혈균 기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검사의 기술수준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李鍾杰委員 현재 시설을 가지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문제가 없습니다.

○李鍾杰委員 이 법을 만듦으로써 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과 관계없이 검사의 수요에 따라서 기구가 결정되는 것이고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합친다고 해서 그것을 따로 하거나 이런 건 없고 대개 전부 따져 봤는데 중복투자 부분은 없습니다.

○咸承熙委員 저는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납꽃게 있잖습니까? 그 문제가 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량 폐기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또 폐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중국과의 무역관계 등등 고려해 가지고 그 문제된 납이 검출된 그것만 폐기하고 다른 건 그냥 유통시키겠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咸承熙委員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볼 때 정부가 뭔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말이지, 경제상 아깝고 하니까 일부만 폐기할 일이지 전량 폐기할 게 뭐 있나 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일이지, 몇 때문에 전량 폐기한다 했다가 국민들로 하여금 하여간 항상 정부가 일관성이 없는, 자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 법으로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전량폐기, 이 부분은 납이 든 문제 있는 꽃게는 전량 폐기한다, 이런 것이 언론에 전달되면서 조금 과장됐거나 이렇게 됐을 것이고 처음부터 수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납이 든 꽃게가 들어 있는 상자, 보통 60마리 있는데……

○咸承熙委員 알았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상자는 따로 분류하고……

○咸承熙委員 관행에 소 한 마리가 광우병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가 가는 소를 다 잡아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문제식물들을 처리하는 관행과 납꽃게를 처리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바이러스 같은 것은 전파성이 대단히 강한 것이고 그건 전염병이기 때문에 오염된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咸承熙委員 행정의 재량에 맡길 게 아니라 법

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준을 정해……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법적으로 ‘오염된 물건은’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은’ 법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된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폐기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咸承熙委員 좋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꽃게는 상자가 냉동……

○咸承熙委員 꼭 꽃게만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건 행정의 일관성이 없거나 또는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법을 차제에 깔끔하게 정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지금 이 법은 제가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있다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되었거나 또는……

○咸承熙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별도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崔炳國 위원 질의하십시오.

○崔炳國委員 崔炳國 위원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묻는다고 해서 이곳에서 바로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는 성질은 아니니까 다음 개정을 하든지 보충을 할 때 좀 참고로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법 16조에 보면 “자금의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아래 실시한 6개의 사업을 하고자 한 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조항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자금지급방법이 어떠냐, 그 자금은 어디에서 육성한 자금이냐라든가 하는 규정도 이 법에 하나쯤은 들어가야 타당하다 이렇게 법체계상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조에 보시면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으면 2항에 설치돼 있는 8개의 법률에 대해서 일단 승인이나 허가, 신고 이런 걸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崔炳國委員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줄 때는

말하자면 2호에 있는 산림법의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림법에서 산림청장이 허가해 줄 것을 또 시장·군수든지 구청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고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사도법, 농지법 또 어떤 데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런 데에 대해서 다 다른 부처의 장들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것을 대행하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崔炳國委員** 그 뜻은 아시겠어요? 물론 거기에도 제3항의 규정에 보면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법조문 하나를 가지고 다른 행정부처장이 행해야 될 허가나 신고, 승인 이런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전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거나 같습니다. 그렇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崔炳國委員** 그렇다면 이 해당법률에 대해 가지고 각각 그런 허가든지 승인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이 법 하나 가지고 다른 8개 있는 행정부처의 장들이 해 줄 권한을 여기에서 바로 해 주게 돼 있다든가 그렇게는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의해 가지고 다음에 법을 고칠 때는 근거규정을 두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崔炳國委員** 그 뜻은 아시겠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알겠습니다.

○**崔炳國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鄭寅鳳 위원 질의하시지요.

○**鄭寅鳳委員** 소위 수산물품질관리법률안에 보면 말이지요. 우선 품질인증제도 이걸 갖다가 아마 이번에 의욕적으로 설치하신 것 같은데 이 품질인증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의욕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품질인증 이렇게 해서 좀 막연한데, 생산자단체에다가 이것을 품질인증을 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자료를 보니까 기왕에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에 관해서 굴비, 마른멸치 등 17개 품목의 수산물에 관해서 ‘품’자 마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품질향상과 우수한 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표시된 내용대로, 말하자면 우수한 품질의 것이라는 이런 보증을 해 주

는 것입니다.

○**鄭寅鳳委員** 생산자단체에게 품질인증을 하게 하는 게 결국은 거제산 멸치, 영광산 굴비 정도의 인증인 것은 몰라도 이것을 무슨 품질인증해 가지고 이게 공신력을 실어 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다, 이렇게 아주 법으로 정해 놓고 그 유효기간은 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법조문에 의하면요. 그러면 2년 미만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법률적으로 지금 허용되지 않는 걸로 규정이 돼 가지고 특히 수산물이나 이런 제품들은 사실상 변질의 우려 같은 것들이 많고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많은데 이걸 확실적으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 유효기간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게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제 법문만 보면……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것은 좀 너무 폐쇄적인 게 아닌가 이게 수산물을 2년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묻겠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품질인증이라는 것은 당해 물품에 관한 품질인증이 아니고 그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생산자관리 전체를 품질인증하는, 예를 들면 어느 공장, 어느 마을의 생산자협동조합 이런 등등이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시설이 되고 거기에서 생산한 물건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 그 자체의 유효기간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요걸 왜……

○**鄭寅鳳委員** 장관 뜻은 알겠는데……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鄭寅鳳委員**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문리상으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게 제6조제3항에 보면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이렇게 품질인증이라는 그 개념을 6조3항에서는 명백하게 해당 수산물,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놨는데 다시 7조에서 받아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

부터 2년으로 한다, 사실 지금 장관께서 의욕하시는 것은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의 허용기간 그것을 아마 의욕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제7조만 이렇게 일반국민들이 읽어보는 경우에는 이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작성하신 분들은 자꾸 문구에 어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문구의 문제라면 좋습니다.

○**鄭寅鳳委員** 몰입이 됐다 그럴까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딱 7조에 보면 굴비도 2년이고 멸치도 2년이고 이런 거지,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무슨 허가 유효기간이라든가 신고, 하여간 그런 기간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게 문법적으로 좀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지금 의욕하고 계신 뜻은 알겠는데 6조3항에도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이렇게 돼 있고 7조에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이렇게 돼 있어서 문맥상 아주 글자 한 자가 틀리지 않고 똑같이 때문에 이게 어떤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법문장의 작성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작성하신 분들은 그냥 그게 그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표현에 관해서는 꼭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그 표현은 고치겠고요.

처음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잠시 답변드리면 이것을 규제로서 만든 것은 아니고 생산자에 대해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하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들 물건을 안심하고 서로 골라 볼 수 있도록, 선별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된 것은 그게 가다가 생산자가 그대로 그 정도의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를 하고 있는가, 기술수준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한 2년 정도마다 정부가 다시 재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이고 더 짧게 할수록 자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대개 2년 정도 보면 결국, 그 안에라도 자격을 상실할 만한 요인이 있을 때에는 다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그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8조4항에 보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委員長 朴憲基** 취지는 알겠습니다. 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조의 품질인증과 8조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과 7조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6조는 鄭 위원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수산물에 관해서 한 것 같고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수산물이 아니고 수산물의 시설, 기술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때 장관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소위에 회부해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鄭寅鳳委員** 연장할 수 있는 한계도 정하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장님, 공장이 계속 생산하는데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委員長 朴憲基** 취지는 알겠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 문맥은 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李鍾杰 위원 질의하시지요.

○**李鍾杰委員** 수산물품질관리법안 42조에 보면, 넷째 줄은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허용기준이고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은 이렇게, 그러면 거래된 이후의 수산물은 어떻습니까? 판매되는 수산물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鍾杰委員**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보면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되기 전이라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음식물의 경우에는 모두 식품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한 꽃게에 식중독균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부 산하의 수산물검사소에서 안전성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입될 때는 통관검사할 때까지만 수산물검사소에서 하고, 그 이후 유통과정에서는 식약청에서 하는데, 사실은 합동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펴서 업무상……

○**李鍾杰委員**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보면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가지고 체계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언어로써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현상을 표현하고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겹쳐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업무한계 구분을 해서 하고,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혼선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모든 농산물, 수산물은 일단 식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식약청에서는 1차 상품으로서의 생산단계까지는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맡겨 놓고, 유통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李鍾杰委員** 그러나 식중독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느 검사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현재로서는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검사하면 하는 것이고, 대체로 직무분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습니다.

○**李鍾杰委員** 체계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의견으로는 소위에서 심사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委員長 朴憲基** 예.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산물품질관리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어항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한국해운조합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선박직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향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의결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적법중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인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과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군인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 역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지 3일이 경과되지 않았습시다라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들 법안 중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되는 법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鄭寅鳳委員** 저희는 아까도 말씀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부처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당장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어야 되니까 연말에 갖다가 밀면 상세한 검토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통과되어서 연말에 해치우는 것이 낫다 이것밖에 안 되지 도대체 몇 건이 올라 오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로 잘못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실 관용이라는 것도 자꾸 하다 보면 얽잡아 보이는 면도 있고 또 법에 대한 준엄한 준수 의무 같은 것을 행정부에 미리 알려 줄 필요도 있고, 이것 내년에도 똑같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일 양해하고 “이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급한 것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해야지요.

거북한 부탁을 위원장님께서 거절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의안만은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내주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오늘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찬찬히 살펴보고 공무원연금법이니 여러 법안들이 내년 1월 1일부터의 시행일자도 중요합시다마는 시행일자도 중요한 것만큼 그 법안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까지의

관행을 바로잡는 의미에서도 이번 의안을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咸承熙 위원 말씀하시지요.

○**咸承熙委員** 저도 鄭寅鳳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원칙을 확립하기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었기 때문에 굳이 반복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거부터의 나쁜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수혜를 받아야 할 국민들 입장에서 법률상의 갭이 발생함으로써 법 집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안한 분 중에 대표가 우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시급성이 과연 있는지, 시급성과 더불어 도대체 매일 늦게 며칠 안 남겨 놓고 이렇게 코밑에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셔서 납득이 가면 저희들이 앞에도 예외를 두었으니까 이번도 그런대로 할 것이지만 납득이 안 가면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炳國 위원님 말씀하세요.

○**崔炳國委員** 崔炳國 위원입니다.

사실 법을 개정하거나 만든다는 것은 법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것은 준법정신을 운운하는 국민들의 의식수준문제도 있지만 이 법 개정 자체부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키라고 강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정하지 말고 시간이 되고 난 후에 상정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鉛熙 위원 말씀하세요.

○**崔鉛熙委員** 요즘 법안심사에 하도 쫓겨 가지고 우리 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실상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입법에서 최종 심사하는 과정이고 해서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은 진작에 와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3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 여부를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서 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규정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공무원연금법은 오늘 가부간에 결

정이 안 납니다. 어차피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연금법하고 군인연금법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동시에 상정해서 소위원회에 같이 넘기는 것이 우리 법사위 업무의 효율상으로도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법사위를 따로 개의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여러 가지 타 상위의 사정을 고려해 주셔서 행자부 관련 법안 중에 공무원연금법이 시한이 되어서 상정이 되니까 도로교통법하고 지적법하고 공직자윤리법도, 이왕 우리 행정자치부장관이 바쁘게 나오셨으니까 같이 올려 주자 그래서 올리신 것 같은데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연금법과 관련된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보다는 함께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오늘 심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타 상위와의 관계에서 협조·조정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연금법 3개 법안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행자부 관련 법안들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위원장님께 재량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우리 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100% 동감하고 제가 사전에 의견조율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趙舜衡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趙舜衡委員** 3일이 지나야 상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원칙에 예외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가 그동안 신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제 16대 국회 들어와서는 입법 과정이 이렇게 소홀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든가 또는 모든 국민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든가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우리가 허락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崔鉛熙 위원의 말씀은 대충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적법은 왜 따라옵니까?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몇 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12월 21일에 상정하는 것은 됩니까? 그리고 도로교통법도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관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는 원칙적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회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법안은 임시국회

에서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제처를 통해서도 당부를 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법안이 정기국회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항상 정기국회에 집중되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는 5일이 되어야만 상정할 수 있고, 법사위원회 체계 및 자구심사도 3일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행정부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급히 통과가 안 되면 곤란하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겠지요. 이게 12월 9일에 제출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일이 걸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될 것이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실정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 부수 입법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이나 이런 것은 사실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입니다. 또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국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 이 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崔鎔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오늘 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바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소위에 회부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정상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회가 열려서 이것을 마친다고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 법안은 양당 간사하고 의논해서 상정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 도로교통법이나 지적법, 공직자윤리법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법안이 아니라서 오늘 심의를 안 해도 됩니다마는 사실은 장관이 국회에만 매일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 이외의 국정수행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매일 국회에 나와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냐, 장관이 한번 나오셨으니까 하루가 모자라는 기간입니다마는 제가 상정하자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제가 혼자 우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할 것까지 없습니다. 양해가 되지 않으면 내일 위원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崔鎔熙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타 상위나 또 연말에 정부가 바쁘고 마무리 할 일들이 많아서 배려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확답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지 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승복을 못합니다.

○崔炳國委員 조금 전에도 예금자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할 때에도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그러니까 내일 또 하든지 아니면 모래 하더라도 원칙대로 합시다.

○崔鎔熙委員 내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소위원회에 오늘 넘어간 법안이 3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하고 관련 2개 법안이 내일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연금법 관련 3개 법안만은 상정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법사위에서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장관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법안은 내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천정배·김태홍·나오연·심규철·이재정·한명숙·김원웅·김근태·윤경식·박인상·이미경·이성현·전용학·정세균·조순형·안영근·김영환·강운태·장성민·김부겸·김민석·정의화·김홍신·임종석·추미애·이창복·이상수·임채정·박병석·이부영·신계륜·김원기·정범구 의원 발의)

**37.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김민석·송영길 의원 외 25인 소개)

**38. 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 (나오연·송영길·윤경식 의원 소개)

(17시52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36항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38항 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 이상 1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

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2건의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宋永吉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永吉議員 존경하는 朴憲基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법사위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서를 참조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의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소송법제정에 관한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증권관련에 대한 집단소송에 한정되어서 청원과 법률안이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환경피해라든지 제조물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칙으로서의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여건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 발의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의 일반법을 도입하기 이전 단계로서 최소한 증권 관련해서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만 이 대주주의 전횡과 독점으로 인한 소수 주주자의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을 고양시키고 또 증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이 법의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증시의 현실은 아시다시피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 분식회계 그리고 펀드매니저들의 고객자산 불법운용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테이트레이더와 국제투기자본,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을 일삼는 작전세력만이 우리 증시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법사위원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의 유형은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손해배상 특칙 중에서 집단적 성격의 분쟁이 뚜렷한 것에 관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한 발행인 등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신고서 등의 허위기재로 인한 신고자 등의 배상책임,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발행인 등의 배상책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따

른 위반자의 배상책임, 시세조종행위자의 배상책임,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에 있어서만큼은 손해배상의 특칙으로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소액의 피해자가 전체적인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남소방지를 위해서 법원에다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이 심사를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집단소송이 필요한 배경과 이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이유들에 대한 반론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여건상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남소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민사소송법과 체계가 맞지 않을 것이 아닌가, 외국에는 성공례가 없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수주주자들의 집단소송으로 인한 남소의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으로 인한 분식결산, 내부자거래, 작전세력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대우를 비롯해서 수많은 투신이나 금융사들의 부도라든지 IMF를 받게 했던 원인들이 이러한 기업 내부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소수 경영주들의 전횡과 독단에 의한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영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경영실패까지 책임을 묻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안 자체도 아까 제시했듯이 근본적으로 아예 허위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분명하게 구성요건으로 특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창조적 파괴행위라든지 경영의 탄력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허위로 작성하거나 거짓말을 해서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시키고 소수주주자한테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고 또 법원의 허가라든지,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러한 소송을 위임해서 하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규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또한 소수주주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

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참여연대 측에서 펀드매니저들이나 주식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팔구십 % 이상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투자를 늘리겠다, 특히 외국 펀드매니저들 100%가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자신들의 투자지분을 늘리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安秉玉**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소액·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이 기업의 주가조작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불경제가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표당사자제도와 소송대리인제도를 도입하고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의 특칙이 규정된 위법행위 등을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하며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특칙 및 분배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단분쟁해결과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외국의 소송제도를 보면,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의 피해와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소송제도로써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을 대표하여 1인 또는 수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집단에 속하는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하며 이 경우 대표당사자는 재산권의 피해 등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재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다수의 소비자피해사건, 환경침해사건, 시민권사건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는 개별법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집단피해구제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표

당사자소송과는 달리 소송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다수의 소비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법률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하에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불복하는 경우 별도의 제소 및 소송심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보면 증권과 관련한 각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그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불경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또한 대표집단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경우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송경제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집단소송제도의 유형과 입법형식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 법률안은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유형에 있어서 대표당사자소송제도를 채택하고 그 입법형식에 있어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단일법체계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입법론적으로 증권거래법 등과 같은 개별법에서 민사소송법 등의 특칙으로 집단소송을 규정하는 것이 고려될 수도 있으나 집단소송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이 법안과 같이 단일법 체계로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극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집단소송제도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첫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지원인 경우에는 지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도 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집단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집단소송의 허가절차와 본안절차 등에 있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집단소송의 허가절차까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법원이 집단소송의 허가를 한 이후의 본안사건에만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소송비용의 예납 및 필요 시 소송비용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금으로 替當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익이 극히 적거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제소 내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대표당사자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이 법 부칙에 의하면 이 법률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기업경영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법률안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증권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계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법률안의 내용과 함께 그 도입 내지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金民錫 의원, 宋永吉 의원 외 25인의 소개로 제출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 청원은 지금 보고드린 宋永吉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과 내용이 동일함으로 동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羅午淵 의원, 宋永吉 의원, 尹景湜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집단소송법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역시 소비자분쟁 등 집단적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그 권리실행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불경제가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조금 전 보고드린 宋永吉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과 그 입법형식과 법안의 내용 등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고 다만 집단소송의 소 제기 주체와 적용범위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차이점에 관한 사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청원은 다수인에게 피해가 가는 집단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위하여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나 법령이 정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과는 달리 법령이 정하는 단체 즉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기타 공익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들이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단체에 대하여 집단소송의 제기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들 단체가 사안에 따라 각각의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남용 또한 우려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집단소송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청원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증권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나 환경보호 등 다수인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집단소송의 적용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집단분쟁이라는 것이 증권 관련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집단소송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집단소송을 현 시점에서 증권 관련 분야 소비자보호나 환경보호 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허용할 경우에는 많은 집단소송의 제기와 이에 따른 기업활동의 위축과 같은 부작용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개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제정법률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청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대체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 商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천정배·김태홍·나오연·심규철·이재정·한명숙·김원웅·김근태·윤경식·박인상·이미경·이성현·전용학·정세균·조순형·안영근·김영환·강운태·장성민·김부겸·김민석·정의화·김홍신·임종석·추미애·이창복·이상수·임채정·박병석·신계륜·심재철·김원기·정범구 의원 발의)

40. 상법개정에관한청원(김민석·송영길 의원 외 24인 소개)

41. 상법개정에관한청원(김무성 의원 외 12인 소개)

(18시07분)

○委員長 朴憲基 의사일정 제39항 상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金民錫·宋永吉 의원이 소개한 상법개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41항 金武星 의원이 소개한 상법개정에관한청원, 이상 1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40항의 청원에 대하여 宋永吉 의원 나오셔서 취지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永吉議員 상법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규정에서 소집의 통지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개정했습니다. 2주간으로 소집통지 기간을 두었던 것을 보다 충실한 준비를 위해서 3주간 전으로 개정했고 서면 또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전자통신수단을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해관계자 거래의 감독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상법 제374조의3을 신설해서 각호 소정의 거래로써 그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 자산 또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고 다만 주주가 10인 이하인 회사는 정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거래를 통해서 특별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 제1항의 결의에 대해서는 제368조제4항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규정과 371조제2항, 출석 의결권 수에 불산입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의해서 내부자 거래가 통제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인데 현행 상법상으로는 집중투표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정관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강제적으로 되지 못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서 실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실제로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과반수가 획득되지 않는 이상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단 1명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대주주의 전횡을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2인 이상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해서 100분의 3 이상으로 한정했고 또 “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조항 때문에 실제로 정관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집중투표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2인 이상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가진 주주” 그래서 100분의 3이라는 제한조항을 삭제했고 또한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예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를 단축했는데 현재는 이사가 보통 3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 우리나라처럼 단기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외부주주의 이사선임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기회가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가 형식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383조에 의한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는 사실상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기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사 해임요건의 완화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은 외부주주의 이사 해임권 및 경영상의 책임 추궁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적대적인 M&A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실패한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회사자본을 보다 능력 있는 경영진한테 신속하게 이동함으로써 실제로 회사의 신진대사, 퇴출과 새로운 진입을 원활하게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는 언제든지 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이사회 운영의 개선에서 소집, 의제선택을 개정했는데 개정의 필요성은 상법은 모든 이사회에 이사회 소집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서조항에서 이사회결의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회사들은 소집권자를 따로 정해 두고 그 사람에 한해서만 이사회 소집과 의제선택, 회의 주재권한을 집중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더라도 이사회 자체가 소집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 집행임원 감시적 기능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실정 이어서 현재 이에 관련해서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 74마595 판례의 취지를 명문화한 것이 이 개정조항입니다.

그래서 신설하기를 “전항 단서에 따라서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회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총회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통해서 소집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작성의 기명날인제 폐지와 서명제 존치인데 항상 가공 이사회가 많이 만들어져서 실제요구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이 빈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항상 논란되는 것이 기명날인의 진실성 여부인데 보통 도장을 다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원내총무한테 다 도장을 맡겨 놓고 있습니다마는 찍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본

인의 의사가 제대로 표현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서명을 본인이 반드시 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의사록의 의사가 현출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주주지분의 보호로 최근에도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를 통한 삼성SDS를 비롯한 불법증여, 탈법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은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키고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 공고를 좀 강화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의 태도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정관에 빠져 나갈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내용은 “주주는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조항인데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의결을 규정한 조항입니다.)의 방식에 따른 결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정기 주주총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차기 정기 주주총회 전일까지 종전 발행주식의 100분의 5의 범위 이내에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의 발행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또 2항 “회사는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신주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 배정의 사유, 발행조건 및 그 근거를 제1항 소정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해서 소수 주주들이 부당성이라든지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해서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형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형해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 기능을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전횡을 하는 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화되었지만 경제 민주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IMF가 왔다고 봅니다.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핵심기능이 바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내실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바로 집중투표제를 비롯한 이사회 관련 개정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의 청원에 대해서는 金武星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議員**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인 연합철강 노조와 한국노총의 청원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연합철강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출 1억불탑을 수상했고 또 3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제1의 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회사에서 평생을 보낸 종업원들은 다른 회사의 종업원들처럼 자본금을 증자할 때 우리사주 주주로 참여해서 또 그 주식이 공개되어서 혜택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그동안 대주주끼리의 경영권 다툼 때문에 증자를 전혀 하지 못해서 증설을 위한 신규투자도 하기 어렵고 또 기업공개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우리사주 참여를 하지 못하는 등 타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 피해가 아주 큰 실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런 회사가 몇 개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상법상 주주의 3분의 1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자본금 증자가 될 수 없는 부분을 일반 의결로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로 소개해 드린 상법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법사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심도 있는 검토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憲基**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安秉玉** 상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

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현행 2주간 전에서 3주간 전으로 연장하고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에 있어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주총회의 사전 소집통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현행과 같이 주주총회 2주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할 경우 경영진이 아닌 일반 주주들이 의결권대리행사를 하기 위한 적정한 기간의 확보가 부족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식의 인정은 이미 일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기간이 단축되는데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며 또한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도입은 전자통신수단의 보안성에 대한 보장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이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그 규모가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해관계자 간 거래 등의 제한은 소수주주들의 몫을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는 이해관계자 간 거래 또는 다른 형태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적 규제수단이 없어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열회사 간의 거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 거래를 제한할 경우 기업경영의 효율성 내지 신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 거래 때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그에 따른 물질·시간적 비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집중투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중투표 청구권자의 자격을 현행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서 “주식을 가진 주주”로 완화하여 단독 주주도 집중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회사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관에 의해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중투표제의 요건완화 등은 현재의 이사선임방식으로 51%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사실상 회사지배권을 가지고 49%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전체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는 기업지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한 소수주주의 실질적인 발언권 내지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집중투표제의 사실상 의무화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을 추천한 소액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집중투표제의 실시 여부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사의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차기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3년 이하인 이사의 임기를 통상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주주에 의하여 매년 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주주 중심의 경영이 가능해지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이사 선임방법의 변경이 병행될 경우에는 정기 주주총회의 실질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단축으로 인한 경영권 불안으로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이나 실천에 차질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이사의 역량, 능력 및 실적을 1년 이내에 평가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 등 경영 안정성 유지의 측면에서 필요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현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가능한 이사의 해임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이사의 임기 3년과 연결하여 보면 외부주주는 3년 동안 어떠한 경영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점 등이 보완되어 이사의 경영상 책임 추궁이 강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이사의 해임요건 완화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대주주의 입지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진의 지위가 불안해져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사회 소집 및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필

요 시 사외이사 등에게도 이사회소집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 소집권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 의할 경우 이사회 소집이 빈번해짐에 따른 효율성 여부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한 그 대안으로서 소집권자인 다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하여 기명날인제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 회사가 보통 이사들의 입장을 일괄 보관하면서 입장을 이용하여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하는 문제점 등을 시정하고 또한 이사의 자필서명을 통하여 이사회 의사록 보존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사회 의사록의 서명의무화에 대하여는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화상회의나 상법상 문서작성 방법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 여타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신주 등의 제3자 배정요건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되어 주주는 그가 보유한 보유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증권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일 회사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 등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하되 신주 등 증권 배정의 사유, 발행조건 및 그 근거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회사들이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주주에게 유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주식의 소유권을 가족 등에게 싼 값으로 양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그 발행 시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의 전환사채 발행 및 양도에 의한 경영권 양도에 대하여도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주 등의 제3자 배정요건 강화는 제3자 배정이 제한됨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제3자 배정 시마다 건별로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이 법률안은 대체로 소수주주권의 강화,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기능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법률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이들 권한 내지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회사경영의 자율성 내지 효율성을 고려한 검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金民錫 의원, 宋永吉 의원 외 24인의 소개로 제출한 상법개정예안청원은 지금 보고드린 宋永吉 의원 대표발의 상법중개정법률안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동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武星 의원 외 12인의 소개로 제출된 상법개정예안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수권자본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자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청원은 모든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모든 주주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배려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수주주의 경우에도 적어도 소수주주가 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한도 내에서는 역시 충실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판례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우나 학자들 사이에서 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논의가 적극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즉 대주주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충실의무의 인정 등과 같은 주장들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주주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지배주주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내부자거래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서 그 이익을 회사에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상법상 이사가 지배주주를 대리 또는 대표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

시한 자 등에 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실상 주주의 충실의무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들이 있는 상황하에서 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조항을 명문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권자본제도의 폐지 또는 변경요건의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청원은 수권자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권자본의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결의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아닌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권자본제도의 폐지 또는 변경요건의 완화는 수권자본의 한도가 모두 소진된 경우 그 증자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제거하고 또한 대주주가 수권자본에 관한 정관변경을 반대할 경우 회사의 자금조달이 봉쇄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수권자본제도의 폐지 또는 요건완화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발행할 주식과 동일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수권자본제도를 완전히 폐지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청원에서와 같이 수권자본 등 정관사항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것 역시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항을 주주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한 현행 상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냅니다)

○委員長 朴憲基 차관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상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언제쯤 제안이 되겠습니까?

○法務部次官 金慶漢 다음 화요일에 국무회의에……

○委員長 朴憲基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에 관해서도 정부에서 개정안이 들어오니 그때 대체토론을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崔炳國委員 법무부차관에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朴憲基 崔炳國 위원 말씀하시지요.

○**崔炳國委員** 법무부에서도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존경하는 宋永吉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사전 연락 좀 안 합니까? 집권당 의원님들하고 이런 것 서로 정보제공 안 합니까? 그리고 당정협의회 해 가지고 같이 보고도 안 합니까?

○**法務部次官 金慶漢** 저희들 정부에서 제출할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마쳤습니다. 宋永吉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崔炳國委員** 제가 보기에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안하고 집권 여당안하고 시차도 얼마 안 두고 이렇게 제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번잡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안이 있으면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개정안 연구할 때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제안할 때에 의원입법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일률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상의 좀 잘 하세요.

○**法務部次官 金慶漢** 宋永吉 의원님 등이 제기한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님도 열 분이 같이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부로서는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점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42. 회사정리법개정에관한청원(천정배 의원 소개)**

(18시33분)

○**委員長 朴憲基**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회사정리법개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千正培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正培議員** 千正培 의원입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환경개선위원회가 청원해서 본 의원이 소개한 회사정리법 개정 청원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정리사건의 성패는 관리인의 적절한 권한행사와 성실한 임무수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이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관리인의 경영활동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지 못하는 현실을 악용해서 관리인이나 관리인 대리 등 정리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자금의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모하는 사

례가 많았고 구 사주 측의 방해로 정리계획의 실행에 지장을 받는 등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덕 해이현상은 관리인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이며 그 감독기관도 그 임무를 철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보다 합리적인 점검을 거쳐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직무수행을 보다 철저히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관리인의 선임방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법원 및 회사 3자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가 두세 명의 관리인 후보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권한을 현재처럼 관리위원회가 전적으로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법원에 그 권한을 주고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종류별 채권자단체도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그 필요성 판단을 최종적으로 법원에 맡기도록 하고,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회의 구성원이 된 종류별 채권자에게 정리사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를 그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과 보수를 공익채권으로 하여 회사의 정리재산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췌록 관리인의 선임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다양한 채권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청원 내용이 실질적으로 검토·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憲基**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斗** 千正培 소개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만을 한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는 양해해 주시면 千正培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토사항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의 설치로 기존의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중복이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주임무가 관리인의 추천과 해임건의에 있다고 보면 현행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을 조정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들의 행위를 견제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의 설치로 인한 비용을 모두 공익채권화할 경우 이는 곧 정리회사의 부담으로 된다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朴憲基** 회사정리법개정에관한청원은 청원의 대상인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이 이미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회사정리법개정에관한청원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의 중에 있는 회사정리법중개정법률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出席委員(13人)**

金容鈞 朴憲基 裴基善 宋永吉  
尹景湜 李鍾杰 李柱榮 鄭寅鳳  
趙舜衡 千正培 崔炳國 崔鉛熙  
咸承熙

○**委員아닌議員(5人)**

權五乙 金武星 李方鎬 鄭長善  
洪在馨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金會瑄  
전문위원 金鍾斗  
전문위원 安秉玉

○**政府側參席者**

법무부  
차관 金慶漢  
재정경제부  
차관 李晶載  
세계실장 金振杓

세제총괄심의관 崔庚洙  
재산소비세심의관 韓廷龍 基萬  
관세심의관 朴龍萬  
교육부  
차관 金相權  
기획관리실장 李基雨  
교육자치지원국장 王金王 福基  
교원정책심의관 金正基  
행정자치부  
장관 崔仁基  
차관보 趙泳之 基澤  
자치행정국장 金之淳  
농림부  
차관 金東根  
기획관리실장 安鍾云  
농업정책국장 鄭鶴秀  
농산물유통국장 蘇萬鎬  
축산국장 金周秀  
식량생산국장 崔燾一  
산림청  
청장 申洵雨  
기획관리관 崔鍾秀  
해양수산부  
장관 盧武鉉  
기획관리실장 金成洙  
해운물류국장 徐廷皓  
항만국장 金英南  
수산정책국장 姜武賢  
안전관리관 金性奎